

일본 JAPAN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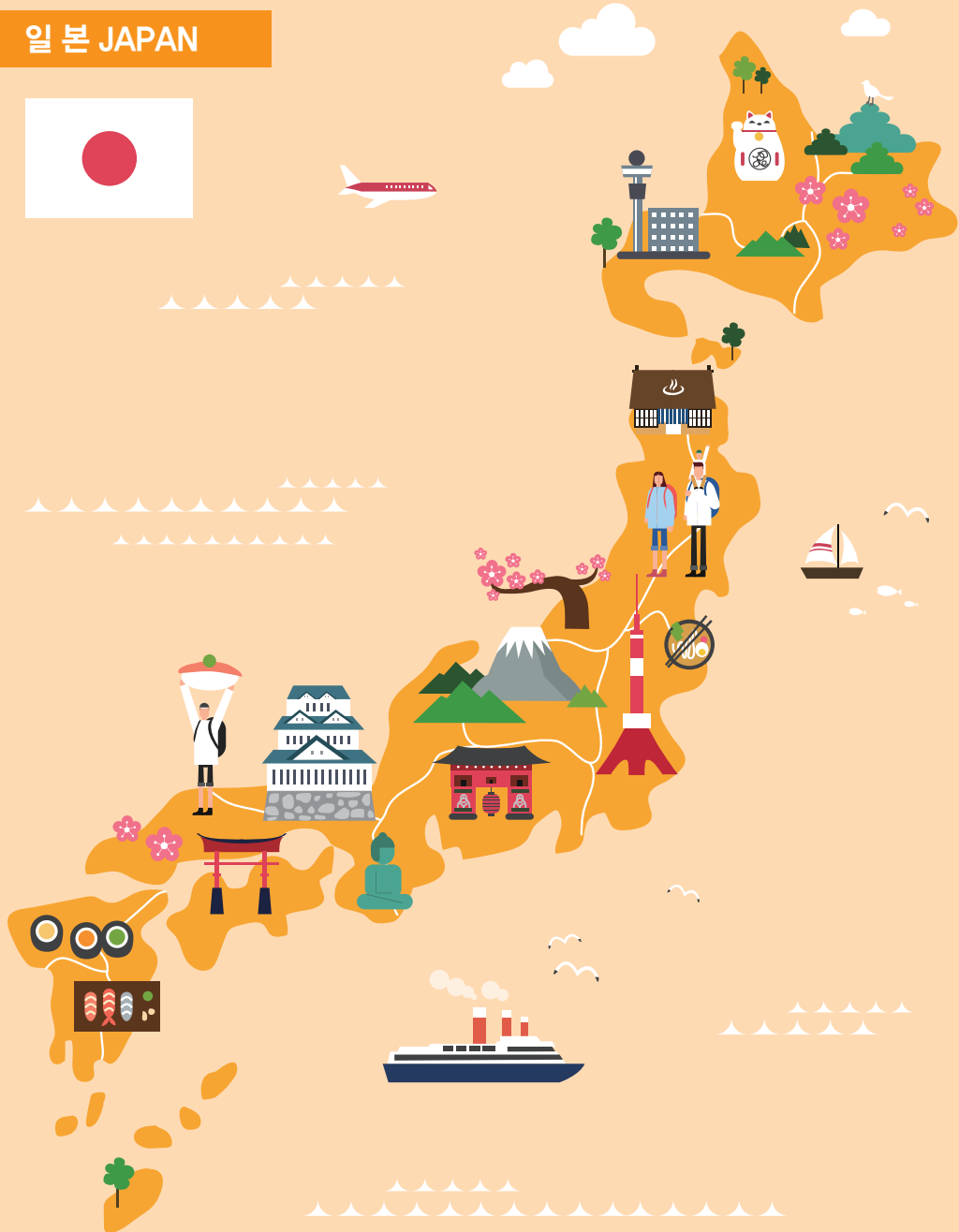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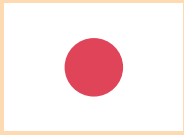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 JAPAN



미·중 무역분쟁과 對韓 수출규제 등 힘든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9년 한국의 무역액은 3년 연속 1조 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세계 시장을 누비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글로벌 무역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생형 FTA는 신흥 유망시장과 FTA를 통한 공조와 협력으로 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핵심 외교·경제정책입니다.

이로써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FTA이자 일본과 최초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15개 참여국의 서명을 이뤄냈습니다. 금번 RCEP 서명은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자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FTA를 출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E-book에서는 발효를 앞둔 RCEP 체결국 중 일본을 중심으로 RCEP의 활용부터 일본 최신 통관·통상환경까지 일본 수출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정보를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은 일본 진출 및 RCEP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 원문이나 관련 법령,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및 일본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 I 장 도입

제 1 절	일본 개황	8
제 2 절	일본 최신 경제동향	9
제 3 절	일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10
제 4 절	일본 통관·통상환경	15

제 II 장 일본 무역현황 및 RCEP 활용방안

제 1 절	일본 무역현황	18
제 2 절	한-일 교역현황	25
제 3 절	RCEP 체결 현황	32
제 4 절	RCEP 적용 절차	42
제 5 절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44

제 III 장 일본 FTA·EPA 및 통관제도

제 1 절	일본 통관 조직	52
제 2 절	일본 통관 제도	56
제 3 절	일본 관세	58
제 4 절	일본의 FTA·EPA	62
제 5 절	일본의 FTA·EPA 활용방법 및 절차	67
제 6 절	우리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	81

Japan

제Ⅳ장 일본 통상환경

제 1 절	일본의 통상 정책 동향	100
제 2 절	한-일 관계 및 외교 현황	108
제 3 절	일본 수출 규제	111
제 4 절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115

제Ⅴ장 우리 기업의 對일수출·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제 1 절	對일 수출·FTA 활용 주요 애로 사례 및 대응방안	122
-------	------------------------------	-----

부 록 전문가기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통관환경 안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신재형 관세관	132
-------------------------	--------------------	-----

참고문헌	137
------	-----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I

도입

제1절 일본 개황


제2절 일본 최신 경제동향

제3절 일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제4절 일본 통관 · 통상환경

1

일본 개황

국가명	일본(JAPAN)
면적	3,779만 7천ha
국기	 일장기(일본어 : 日章旗 닛쇼키)
수도	동경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은 고온다습, 겨울은 한랭건조
인구	1억 2,647만 6,458명
민족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Shintoism), 불교, 기독교,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Yen(¥)
산업구조	서비스업 69%, 제조업 30%, 농업 1%(2017년 기준)
주요사회 개발지표	84세(평균수명/2017년 기준), 85%(인터넷사용자 비율/2017년 기준)
주요 수출국	미국, 중국, 대한민국, 대만, 홍콩
주요 수입국	중국, 미국, 호주,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2

일본 최신 경제동향

구분(단위)	2017	2018	2019	2020(f)
GDP(억 달러)	48,598	49,718	51,545	54,131
1인당 GDP(달러)	38,343	39,304	40,847	43,043
경제성장률(%)	1.9	0.8	0.9	0.5
소비자물가상승률(%)	0.5	1.0	1.0	1.3
환율[달러당,연중/(¥)]	112.2	110.4	108.4	105.9
실업률(%)	2,825	2,442	2,358	3,305

자료 : 2020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IMF(실업률)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일본 경제 동향

- (GDP)2019년 소비세 인상 및 대외 수출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20년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경제 마이너스 성장 격화
- 2019년 실질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0.7%로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나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수출 감소,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
 - * 2019년 10월 1일 일본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및 일본 내 영업제한에 따라 2019년 4분기에 이어 경기악화가 격화



3

일본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 **일본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G7국 중 하나이며, 일본의 경제 동향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산업용, 소비용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세계의 무역대국으로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물질산업, 에너지산업이 주요산업임
 - **(경상수지)** 일본의 2020년 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1조 6,602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올해 2월 이래 7개월 만에 흑자폭 확대(75개월 연속 흑자)
 - 동일 발표된 2020년도 상반기(4~9월)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서는 경상수지가 6조 6,901억 엔의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 2011년 이래 최대 감소폭 기록
 -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9,326억 엔 증가한 9,184억 엔으로 흑자 전환
 -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며 흑자 전환
 - 수입은 원유·조유 및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가격 저하로 전년 동월대비 19.2% 감소한 반면, 수출은 경제활동의 재개 등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침체가 완화되며 4.2% 감소
 -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2,347억 엔 감소한 ▲2,374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 방일외국인 관광객 급감 추세가 지속되며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
 -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311억 엔 감소한 1조 7,13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배당금 수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며 '증권투자수익' 흑자폭 축소
 -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4,993억 엔 감소한 ▲7,34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¹⁾

■ **(동향) 일본은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설비투자 및 개인 소비가 주축할 우려가 있으며 수출환경도 좋지 않아 경기 하강국면이 우려됨**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 수익으로 설비투자는 견실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계화 및 무인화 투자와 더불어 재해대비 투자 증가 예상

✓ **일본 설비 투자 동향**

- 재무성 발표 법인기업통계(4~6월)에 의하면 설비투자액(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10조 8,68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11사분기 연속 증가
- 업종별로 보면 미-중 무역마찰과 중국 경제 감속 등으로 제조업은 감소하였으나 디지털화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비제조업이 대폭 증가함
- 일본 정부는 재해 사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촉진 세제[중소기업 방재(防災) 및 감재(減災) 투자촉진 세제]신설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관련 세제를 확충, 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무역마찰 등의 불안감 및 설비투자 조정 압력 등이 하락요인

- **(고용)** 일하는 방식 개혁, 외국 인재 도입 등의 정책 추진으로 노동 수급 불균형(일손 부족) 문제는 완화 전망
 - 유효 구인 배율은 2019년 7월 1.5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의 추가적인 노동력 수요가 약화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외국 인재 도입 등이 실시되어 일손 부족문제가 조금씩 해소되는 중

- 실업률은 2019년 7월 2.2%로 1992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향후 세계 경기 기조 및 국내적으로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를 배경으로 수출, 생산, 개인 소비에 대한 영향 우려로 노동 수급의 완화가 예상됨

- **(소비)** 소비세 증세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소비 마인드 하락 압력

-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전월을 밑돌아, 10월 소비증세를 앞두고 경계감을 나타내며, 다만 경감세율 도입(식품 등은 기존 8%유지)과 캐시리스 결제 포인트환원 등의 대책을 실감할 경우 소비 마인드 개선 기대도 존재

- **(백화점)** 방일 관광객 대상 판매가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화장품 등 고급 브랜드 판매가 증가했으나, 최근 해외로부터 반입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방일 외국인 수요 지속여부가 불투명

- (주요 산업별 산업환경) 일본 주요 산업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스마트폰, TV, 백색가전, 일반기계

일본 주요 산업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반도체	차량용, IoT* 관련 수요 기대되나 세계 경기 악화가 관건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
석유화학	일본의 에틸렌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철강	올림픽 특수는 마무리, 수출 수요는 세계 경기에 영향
자동차	증세 막바지 수요는 한정적, 수출에 의존하여 국내생산 소폭 증가
스마트폰	국내시장 성숙화, 하이엔드와 저가의 양극화 전개
TV	4년 만에 TV 시장 반등, 2020년은 도쿄올림픽 특수 기대
백색가전	4년 연속 국내 출하액 증가, 2019년은 소비세 영향으로 주춤
일반기계	2019년 내수 전년 대비 감소 전망, 2020년도 성장 불투명

자료 : 2020 권역별 진출전략(일본)/KOTRA

- (2020년 일본 경제 전망)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투자, 무역,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활동들이 대폭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9년 대비 -6.2%로 크게 하락할 전망
 - (소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따른 내수 회복이 어려워졌고, 4월 7일 아베 총리가 도쿄 등 7개 지역에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4월 16일 긴급사태 대상지역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도쿄올림픽 연기에 더해 방일 관광객 대폭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가 상반기에 두드러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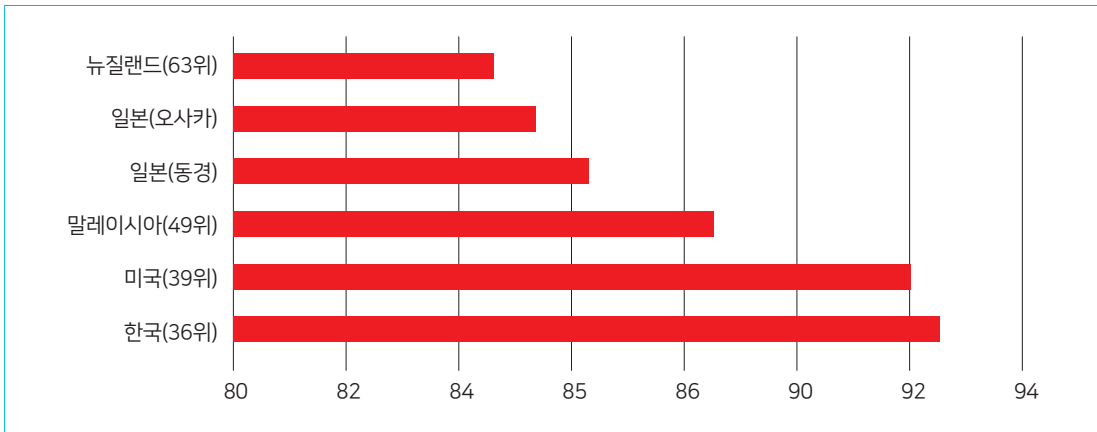
-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3,7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93% 감소함

4

일본 통관·통상환경

주요국 국경 간 무역 용이성(Trading across Borders) 수준

일본 및 주요국 국경간 무역 용이성 수준 비교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원활화 수준

한국 및 일본 무역원활화 수준 비교



자료 :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2019)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II

일본 무역현황 및 RCEP 활용방안

제1절 일본 무역현황

제2절 한-일 교역현황

제3절 RCEP 체결 현황

제4절 RCEP 적용 절차

제5절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1

일본 무역현황

일본의 수출입 동향

- 2017년, 2018년 수출 증가하나 2019년 다소 감소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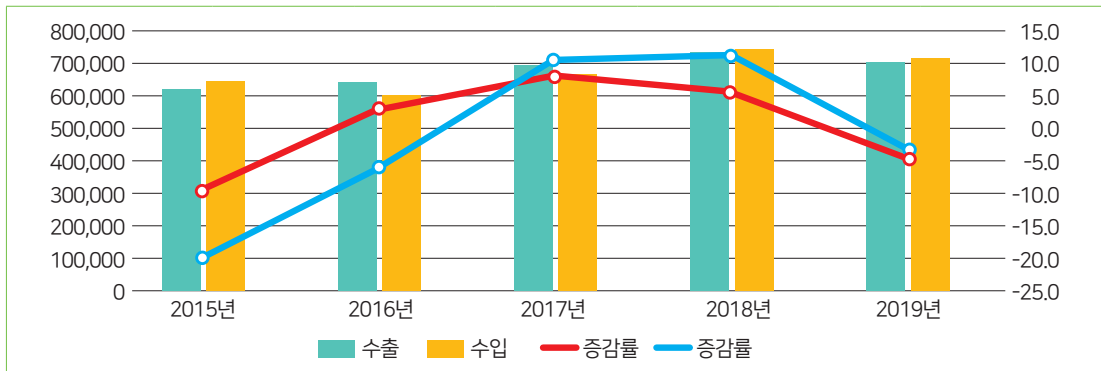
- 수출 5대 국가 : 미국 > 중국 > 대한민국 > 대만 > 홍콩
- 수입 5대 국가 : 중국 > 미국 > 호주 > 대한민국 >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수출입 동향

최근 5년간 일본 수출입 동향(2015-2019)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총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5년	625,006	-9.4	648,436	-20.2	1,273,442	-23,430
2016년	645,589	3.3	608,072	-6.2	1,253,661	37,517
2017년	698,022	8.1	672,100	10.5	1,370,122	25,922
2018년	738,164	5.8	749,092	11.5	1,487,256	-10,928
2019년	705,842	-4.4	720,964	-3.8	1,426,806	-15,122



자료 : ITC

- 최근 5년간 일본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은 수출 증감률은 각각 3.3%, 8.1%, 5.8%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16년, 2017년, 2018년 일본 수출실적은 3개년 내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실적 역시 2017년과 2018년 2개년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2018-2019)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8	2019	합계				2018	2019	합계	
	소계	738,164	705,842	1,444,006	100		소계	749,092	720,964	1,470,057	100
1	미국	140,656	140,469	281,125	19	1	중국	173,815	169,236	343,051	23
2	중국	144,046	134,720	278,766	19	2	미국	83,668	81,259	164,928	11
3	대한민국	52,479	46,283	98,762	7	3	호주	45,734	45,462	91,196	6
4	대만	42,392	43,013	85,405	6	4	대한민국	32,149	29,629	61,778	4
5	홍콩	34,722	33,632	68,354	5	5	사우디아라비아	33,815	27,666	61,480	4
6	태국	32,273	30,195	62,468	4	6	대만	27,135	26,860	53,995	4
7	독일	20,891	20,233	41,124	3	7	UAE	27,610	26,197	53,807	4
8	싱가포르	23,410	20,174	43,584	3	8	태국	25,087	25,363	50,450	3
9	베트남	16,434	16,489	32,923	2	9	독일	25,989	24,936	50,925	3
10	호주	17,088	14,496	31,584	2	10	베트남	21,145	22,477	43,621	3
11	인도네시아	15,792	13,986	29,778	2	11	인도네시아	21,604	18,148	39,752	3
12	영국	14,033	13,973	28,006	2	12	말레이시아	18,937	17,653	36,590	2
13	말레이시아	13,941	13,296	27,236	2	13	러시아	15,605	14,345	29,950	2
14	네덜란드	12,716	11,916	24,633	2	14	카타르	14,874	13,157	28,031	2
15	인도	11,011	10,982	21,992	2	15	프랑스	11,051	12,047	23,098	2

자료 : ITC

■ 최근 2년간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기준 3위 국가이며 수입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 2018~2019년 일본의 총 수출액은 누적기준 1,444,006백만불이며, 일본의 5대 수출 국가는 미국(19%), 중국(19%), 대한민국(7%), 대만(6%), 홍콩(5%)임
- (수입) 2018~2019년 일본의 총 수입액은 약 1,470,057백만불이며, 5대 수입주요 국가는 중국(23%), 미국(11%), 호주(6%), 대한민국(4%), 사우디아라비아(4%) 순으로 확인됨

■ 참고로 최근 RCEP의 최종서명으로 인해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나라의 품목의 민감성을 최대 반영하여 전체 이익균형을 도모하기로 함³⁾

» 일본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일본의 품목별 수출 동향(2018-2019)

[단위: 천불, %]

수출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738,164,252	705,842,013	-4.4
1	자동차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49,394,851	49,845,528	0.9
2	자동차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시를 초과하는 것	21,883,156	18,150,073	-17.1
3	자동차 부품	870840	기어박스	18,957,882	16,986,979	-10.4
4	자동차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1,071,157	16,315,948	47.4
5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1,588,292	11,601,008	0.1
6	반도체	854239	기타	10,812,400	11,523,918	6.6
7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603,779	11,054,866	-4.7
8	석유제품	271019	기타	8,637,671	9,427,105	9.1

수출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9	컴퓨터	844399	기타	8,121,314	7,614,422	-6.2
1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6,354,957	7,474,948	17.6
11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7,957,695	7,455,007	-6.3
12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120	탱커	5,835,337	5,997,333	2.8
13	자동차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7,018,835	5,502,329	-21.6
14	금·은 및 백금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225,523	5,353,684	2.5
15	기타 가정용전자	847989	기타	5,564,167	5,269,198	-5.3
16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5,689,802	5,029,592	-11.6
17	자동차 부품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4,904,977	4,669,664	-4.8
18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3,875,794	4,428,643	14.3
19	기구부품	853690	그 밖의 기기	4,713,083	4,353,913	-7.6
20	수동부품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 (다층)	4,040,387	4,315,051	6.8

자료 : ITC

■ 2018년~2019년 일본의 품목별 수출 동향은 전년대비 -4.4% 감소한 바 있음

- 일본의 품목별 수출 주요품목은 자동차(HS 8703.23/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자동차(HS 8703.24/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자동차 부품(HS 8708.40/기어박스) 등임
- (수출 증가 품목) 2019년 기준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HS 8703.40/그 밖의 차량),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HS 8901.90/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항공기 및 부품(HS 8803.30/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석유제품(HS 2710.19/석유조제품의 기타의 물품), 수동부품(HS 8532.24/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등임

☑ 일본의 수출 증가 품목(2018-2019)

• HS 8703.40 > HS 8901.90 > HS 8803.30 > HS 2710.19 > HS 8532.24

- (수출 감소 품목) 2019년 기준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자동차(HS 8703.22/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 1,500cc 이하인 것), 반도체 제조용 장비(HS 8486.90/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자동차 부품(HS 8708.40/기어박스), 기구부품(HS 8536.90/그 밖의 기기)등임

☑ 일본의 수출 감소 품목(2018-2019)

• HS 8703.22 > HS 8703.24 > HS 8486.90 > HS 8708.40 > HS 8536.90

일본의 품목별 수입 동향(2018-2019)

[단위: 천불, %]

수입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749,092,205	720,964,445	-3.8
1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 (원유로 한정한다)	80,676,236	73,085,389	-9.4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	42,851,145	39,947,943	-6.8
3	석탄	270112	유연탄	23,611,052	21,638,755	-8.4
4	무선 통신기기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7,722,672	15,441,687	-12.9
5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11,071,157	16,315,948	47.4
6	석유제품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3,784,345	10,635,305	-22.8
7	철광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543,659	9,025,862	19.6
8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9,834,838	8,292,775	-15.7

수입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9	컴퓨터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058,312	8,230,897	16.6
10	반도체	854239	기타	9,011,815	8,014,771	-11.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938,696	7,379,527	6.4
12	농약 및 의약품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809,067	7,248,923	24.8
13	유선 통신기기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588,166	6,274,325	12.3
14	항공기 및 부품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586,130	5,163,370	44.0
15	산업용 전기기기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829,752	4,988,948	3.3
16	컴퓨터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230,204	4,574,631	8.1
17	자동차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4,491,062	4,349,719	-3.1
18	LPG	271112	프로판	5,192,316	4,026,920	-22.4
19	항공기 및 부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405,127	3,664,037	-16.8
20	반도체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3,678,500	3,576,346	-2.8

자료 : ITC

2

한-일 교역현황

☑ 한국의 對일 수출입 동향

- 최근 5년간 총 교역액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적자폭 다소 감소

☑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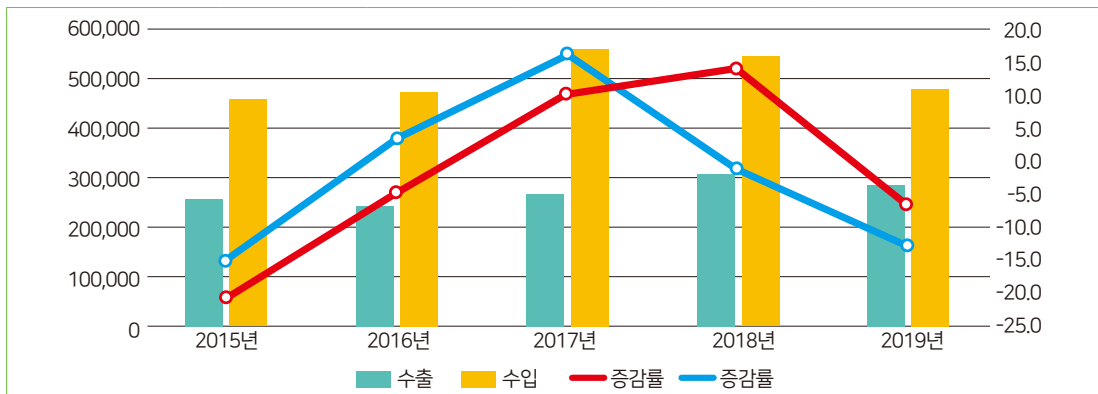
- 수출 5대국가 : 중국 > 미국 > 베트남 > 홍콩 > 일본
- 수입 5대국가 : 중국 > 미국 > 일본 > 사우디아라비아 > 베트남

» 한국의 對일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일 수출입 동향(2015-2019)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5년	25,577	-20.5	45,854	-14.7	71,431	-20,277
2016년	24,355	-4.8	47,467	3.5	71,822	-23,112
2017년	26,816	10.1	55,125	16.1	81,941	-28,309
2018년	30,529	13.8	54,604	-0.9	85,133	-24,075
2019년	28,420	-6.9	47,581	-12.9	76,001	-19,161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일본 교역 동향은 수출은 28,420백만불이며, 수입은 47,581백만불로 무역수지는 - 19,161백만불로 적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7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음

○ 특히,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수출실적은 2개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13.8%로 증가하였으며, 對일 수입실적 역시 2016년,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3.5%, 16.1%로 증가하였음

» 한국의 對일 수출입 비중

한국의 對일 수출입 비중(2018-2019)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8	2019	합계				2018	2019	합계	
	총계	604,860	542,233	1,147,093	100		총계	535,202	503,343	1,038,545	100
1	중국	162,125	136,203	298,328	26	1	중국	106,489	107,229	213,718	21
2	미국	72,720	73,344	146,064	13	2	미국	58,868	61,879	120,747	12
3	베트남	48,622	48,178	96,800	8	3	일본	54,604	47,581	102,185	10
4	홍콩	45,996	31,913	77,909	7	4	사우디아라비아	26,336	21,841	48,177	5
5	일본	30,529	28,420	58,949	5	5	베트남	19,643	21,072	40,715	4
6	대만	20,784	15,666	36,450	3	6	호주	20,719	20,608	41,327	4
7	인도	15,606	15,096	30,702	3	7	독일	20,854	19,937	40,791	4
8	싱가포르	11,782	12,768	24,550	2	8	대만	16,738	15,718	32,456	3
9	멕시코	11,458	10,927	22,385	2	9	러시아	17,504	14,567	32,071	3
10	말레이시아	8,994	8,843	17,837	2	10	카타르	16,294	13,037	29,331	3
11	독일	9,373	8,686	18,059	2	11	쿠웨이트	12,794	10,771	23,565	2
12	필리핀	12,037	8,365	20,402	2	12	말레이시아	10,206	9,280	19,486	2
13	호주	9,610	7,891	17,501	2	13	UAE	9,287	8,991	18,278	2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8	2019	합계				2018	2019	합계	
14	태국	8,505	7,804	16,309	1	14	인도네시아	11,161	8,820	19,981	2
15	러시아	7,321	7,774	15,095	1	15	이라크	9,569	7,995	17,564	2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금액은 2019년 기준 수출국 기준 5위이며 수입국 기준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 2018~2019년 누적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약 USD 1조 1,470억불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2,983억불(26%/2018~2019년 누적), 미국 1,460억불(13%/2018~2019년 누적), 베트남 968억불(8%/2018~2019년 누적) 등으로, 일본은 589억불(5%/2018~2019년 누적)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중 5위를 차지함
- (수입) 2018~2019년 누적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은 약 USD 1조 385억불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2,137억불(21%/2018~2019년 누적), 미국 1,207억불(12%/2018~2019년 누적), 일본 1,021억불(10%/2018~2019년 누적) 등으로 확인됨

■ 특히 RCEP 체결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FTA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RCEP 포함 최근 진행 중인 주요 다자간 무역협정		
협정	대상국가	무역규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중국·일본·호주 뉴질랜드	5조 4000억달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조 9000억달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2조 5000억달러

자료 : RCEP 타결...26조 달러 새 시장 열린다(한국경제 보도자료/2020.11.23)

» 한국의 對일 품목별 수출입 비중

한국의 對일 품목별 수출 동향(2018-2019)

[단위: 천불, %]

수출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 체				30,528,580	28,420,213	-6.9
1	석유제품	271019	기타	2,689,694	2,204,107	-18.1
2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349,491	1,883,055	-19.9
3	금은 및 백금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698,107	664,890	-4.8
4	기타 잡제품	721049	기타	406,659	465,064	14.4
5	반도체	854232	메모리	552,315	456,544	-17.3
6	정밀화학원료	284190	기타	93,595	354,367	278.6
7	섬유 및 화학기계	732690	기타	401,490	343,607	-14.4
8	레일 및 철구조물	730890	기타	221,206	325,327	47.1
9	금형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258,881	301,708	16.5
10	반도체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 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 다이오드	340,865	299,475	-12.1
11	기타 잡제품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49,656	269,456	7.9
12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324,410	268,868	-17.1
13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241,487	264,285	9.4
14	비누치약 및 화장품	330499	기타	195,526	261,711	33.8
15	건설광산기계	843149	기타	254,190	255,450	0.5
16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72,362	245,026	-10.0

수출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7	자동차 부품	870899	기타	238,989	223,043	-6.7
18	기호식품	240220	결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12,979	218,566	2.6
19	기타 잡제품	720917	두께가 0.5밀리미터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09,646	206,404	-1.5
20	건전지 및 축전지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108,211	187,413	73.2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PT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금은 및 백금, 반도체 등임

- (수출 증가 품목) 정밀화학원료(HS 2841.90/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의 물품), 건전지 및 축전지(HS 8507.60/리튬이온 축전지), 레일 및 구조물(HS 7308.90/구조물의 기타의 품목), 비누치약 및 화장품(HS 3304.99/화장품의 기타의 물품), 금형(HS 8480.71/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등임

☑ 한국의 對일 수출 증가 품목(2018-2019)

- HS 2841.90 > HS 8507.60 > HS 7308.90 > HS 3304.99 > HS 8480.71

- (수출 감소 품목) 석유제품[HS 2710.12/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석유제품[HS 2710.19/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의 기타의 품목], 반도체(HS 8542.32/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장비(HS 8486.90/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로 확인됨

☑ 한국의 對일 수출 감소 품목(2018-2019)

- HS 2710.12 > HS 2710.19 > HS 8542.32 > HS 8486.90 > HS 7326.90

한국의 對日 품목별 수입 동향(2018-2019)

[단위: 천불, %]

수입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 체				54,596,471	47,577,242	-12.9
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921,532	1,909,964	-0.6
2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제조용 기계와 기기	3,842,184	1,397,323	-63.6
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468,626	1,297,347	-11.7
4	반도체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975,764	1,003,284	2.8
5	반도체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화합원소(디스크·웨이퍼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화합화합물	889,164	930,291	4.6
6	기초유분	270730	크실올	971,534	839,949	-13.5
7	기타 화학공업제품	382499	기타	879,636	774,592	-11.9
8	기타 잡제품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698,264	681,164	-2.4
9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885,152	664,991	-24.9
10	자동차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621,050	628,394	1.2
11	기타 잡제품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91,066	570,865	16.3
12	섬유 및 화학기계	732690	기타	622,866	569,862	-8.5
13	자동차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19,512	514,105	-1.0
14	광학기기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653,303	485,478	-25.7
15	자동차부품	870840	기어박스	452,121	469,429	3.8

수입						
순위	산업 분류	HS 6단위	품명	금액		2018 - 20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6	반도체 제조용 장비	848640	이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524,912	468,828	-10.7
17	석유제품	271019	기타	632,469	436,603	-31.0
18	반도체 제조용 장비	903082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463,312	420,618	-9.2
19	플라스틱 제품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77,152	393,675	4.4
20	기구부품	853400	인쇄회로	406,636	385,720	-5.1

주: 2019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2018~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합금 철 선철 및 고철, 반도체, 기초유분, 기타 화학공업제품 등임

- (수입 증가 품목) 기타 잡제품(HS 7208.51/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반도체[HS 3818.00/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플라스틱 제품(HS 3920.99/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자동차부품(HS 8708.40/기어박스), 자동차(HS 8703.23/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등임

✓ 한국의 對일 수입 증가 품목(2018-2019)

- HS 7208.51 > HS 3818.00 > HS 3920.99 > HS 8708.40 > HS 8541.40

- (수입 감소 품목) 반도체 제조용 장비(HS 8486.20/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석유제품(HS 2710.19/석유조제품의 기타의 제품), 광학기계(HS 9001.20/편광재료제의 판), 반도체 제조용 장비(HS 8486.90/부분품과 부속품), 기초유분(HS 2707.30/크실올)등임

✓ 한국의 對일 수입 감소 품목(2018-2019)

- HS 8486.20 > HS 2710.19 > HS 9001.20 > HS 8486.90 > HS 2707.30

3

RCEP 체결 현황⁴⁾

» RCEP 개관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아시아 지역 세계경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주요국이 대거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임
- 최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2020.11.15)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함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 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 후 협상 未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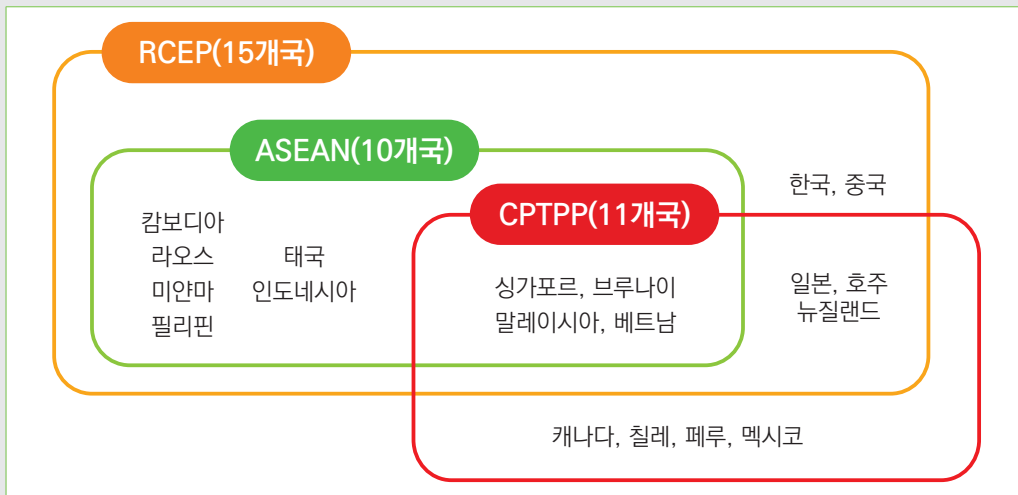
☑ 메가 FTA란?

- ‘Mega(메가)’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접두어로, 메가 FTA는 여러 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 협상을 체결하는 일반 FTA보다 규모가 큰 FTA를 말함
- 최근 추진된, 또는 추진 중인 주요 메가 FTA로는 RCEP, CPTPP, 한중일 FTA 등이 있음

구분	RCEP	CPTPP	한중일 FTA
정식명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한국-중국-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추진배경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 위상 제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플랫폼 구축	안정적 정치 경제 협력 체제 구축

구분	RCEP	CPTPP	한중일 FTA
참가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총 15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총 11개국)	한국, 중국, 일본 (총 3개국)
경제규모 (WB 2019, 對 세계)	GDP 28% 인구 29%, 수출입 27%	GDP 12% 인구 6% 수출입 15%	GDP 24% 인구 21% 수출입 19%
진행상황	서명 (2020.11.15)	발효 (2018.12.30)	협상 중 (2012.11~2020. 12 현재)
시장개방 수준(예상)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

자료 :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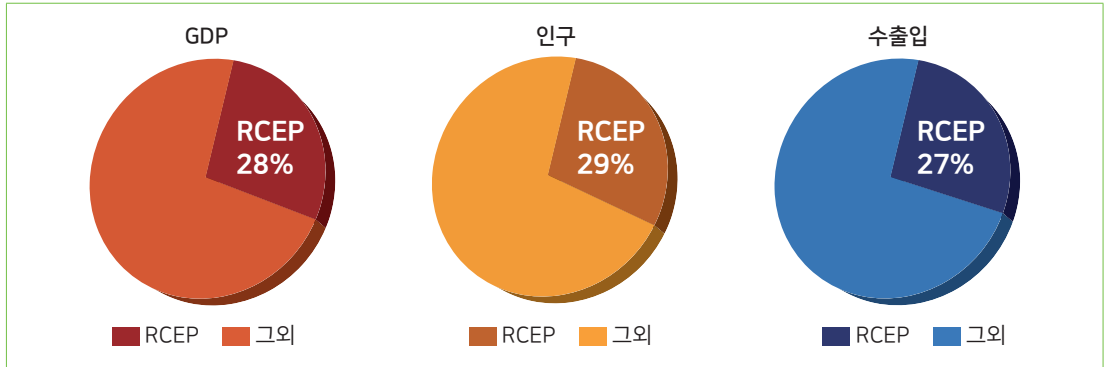
■ RCEP 경제규모*

*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 기준

- (GDP) 2019년 기준 약 24조 8,934억 달러(전 세계 28% 차지)
- (인구) 2019년 기준 약 22억 명(전 세계 29% 차지)
- (수출입) 2019년 기준 약 102억 달러(전 세계 27% 차지)
 - 수출 약 53억 달러(전 세계 29%), 수입 약 49억 달러(전 세계 26%)

對세계 RCEP 경제규모

World Bank(2019) Data 기준



자료 : 데이터(WB, 2019) 기반 연구자 작성

» RCEP 추진 현황

- 2012년 11월 20일(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참여국 정상간 RCEP 협상 개시 선언
-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시 RCEP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필요한 국내 절차 진행
 - “통상절차법” 및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법정 절차로 RCEP 참여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공청회(10.24) → FTA 추진위원회(11.7) → 대외경제장관회의(11.13) → 외통위 보고 (11.19)
 - 이와 별도로 지속적인 여론 수렴 활동 전개
 -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업계 간담회(9.13, 10.12), RCEP 세미나 개최(10.17) 등
- 2012년 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시 금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
 - 동 계기에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도 확정
- ASEAN측은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시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 제시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RCEP 협상의 2012년 11월 개시선언을 목표로 설정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 논의 진행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2013년 5월 협상개시 후 2020년 11월까지 제31차 공식협상을 개최 하였으며, 4차례 정상회의 개최

- 20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20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
- 20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타결을 결의
- 2019년 11월 4일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RCEP 협정 최종 서명 완료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 RCEP 체결 일지

RCEP 체결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0. 11. 15	RCEP 서명 RCEP 제4차 정상회의 개최(서울, 화상)
2020. 08. 27	RCEP 제8차 장관회의 개최
2020. 07. 09	RCEP 제31차 공식협상 개최
2020. 05. 15, 18, 20	RCEP 제30차 공식협상 개최
2020. 04. 20, 22, 24	RCEP 제29차 공식협상 개최
2019. 11. 04	15개국 협정문 타결 RCEP 제3차 정상회의 개최(방콕)
2019. 10. 11 ~ 12	RCEP 제9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방콕)
2019. 09. 23 ~ 27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다낭)

일자	주요 내용
2019. 09. 07 ~ 08	RCEP 제7차 장관회의 개최(방콕)
2019. 08. 24 ~ 08. 25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자카르타)
2019. 08. 03	RCEP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베이징)
2019. 07. 26 ~ 07. 31	RCEP 제27차 공식협상 개최(정저우)
2019. 06. 28 ~ 07. 03	RCEP 제26차 공식협상 개최(멜버른)
2019. 05. 27 ~ 31	RCEP 제5차 회기간 협상 개최(방콕)
2019. 03. 02	RCEP 제7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프놈펜)
2019. 02. 22 ~ 28	RCEP 제25차 공식협상 개최(인도네시아)
2018. 11. 14	RCEP 제2차 정상회의 개최(싱가포르)
2018. 10. 22 ~ 26	RCEP 제24차 공식협상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2018. 10. 13	RCEP 제6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싱가포르)
2018. 08. 31	RCEP 제6차 장관회의 개최(싱가포르)
2018. 07. 23 ~ 27	RCEP 제23차 공식협상 개최(방콕)
2018. 07. 01	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도쿄)
2018. 05. 04 ~ 08	RCEP 제22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2018. 03. 03	RCEP 제4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싱가포르)
2018. 02. 05 ~ 09	RCEP 제21차 공식협상 개최(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2017. 11. 14	RCEP 제1차 정상회의 개최(필리핀 마닐라)
2017. 10. 24 ~ 28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최(인천 송도)
2017. 09. 10	RCEP 제5차 장관회의 개최(필리핀 마닐라)
2017. 07. 24 ~ 28	RCEP 제19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하이데라바드)
2017. 05. 22	RCEP 제3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베트남 하노이)
2017. 05. 08 ~ 12	RCEP 제18차 공식협상 개최(필리핀 마닐라)
2017. 02. 27 ~ 03. 03	RCEP 제17차 공식협상 개최(일본 고베)
2016. 12. 06 ~ 10	RCEP 제16차 공식협상 개최(인도네시아 땅그랑)
2016. 11. 04	RCEP 제2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필리핀 세부)

일자	주요 내용
2016. 10. 17 ~ 21	RCEP 제15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톈진)
2016. 08. 15 ~ 19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베트남 호치민)
2016. 08. 05	RCEP 제4차 장관회의 개최(라오스)
2016. 06. 10 ~ 18	RCEP 제13차 공식협상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2016. 04. 22 ~ 29	RCEP 제1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퍼쓰)
2016. 02. 15 ~ 19	RCEP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2015. 10. 12 ~ 16	RCEP 제10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2015. 08. 24	RCEP 제3차 장관회의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5. 08. 03 ~ 07	RCEP 제9차 공식협상 개최(미얀마 네피도)
2015. 07. 13	RCEP 제1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5. 06. 08 ~ 13	RCEP 제8차 공식협상 개최(일본 교토)
2015. 02. 09 ~ 13	RCEP 제7차 공식협상 개최(태국 방콕)
2014. 12. 01 ~ 05	RCEP 제6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그레이트노이다)
2014. 08. 27	RCEP 제2차 장관회의 개최(미얀마)
2014. 06. 21 ~ 27	RCEP 제5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2014. 03. 31 ~ 04. 04	RCEP 제4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난닝)
2014. 01. 20 ~ 24	RCEP 제3차 공식협상 개최(말레이시아)
2013. 09. 23 ~ 27	RCEP 제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2013. 08. 19	RCEP 제1차 장관회의 개최(브루나이)
2013. 05. 09 ~ 19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2012. 11. 20	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
2012. 10. 26 ~ 27	ASEAN-FTA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자카르타)
2012. 10. 24	RCEP 공청회
2012. 10. 17	RCEP 세미나
2012. 10. 12	제2차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 간담회
2012. 10. 11 ~ 12	제1차 RCEP 투자작업반 회의 (반둥)

일자	주요 내용
2012. 10. 09 ~ 10	제1차 RCEP 서비스작업반 회의 (반둥)
2012. 09. 13	제1차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 간담회
2012. 08. 30	ASEAN-FTA 파트너간 경제장관회의 (시엠립)
2012. 08. 29	ASEAN-FTA 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시엠립)
2012. 08. 11 ~ 12	ASEAN-FTA 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보고르)
2012. 07. 19	ASEAN-FTA 파트너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치앙라이)
2012. 06. 26 ~ 28	제1차 RCEP 상품작업반회의 (하노이)
2012. 05. 17 ~ 18	ASEAN-FTA파트너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마닐라)
2011. 11. 18	ASEAN 정상회의시 RCEP 구상(Framework) 채택 (발리)

자료 : 산통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 8. 27(목) 10:00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아세안 10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장관(수석대표)을 수석대표로 각국 협상단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연내 서명 준비와 인도 이슈 및 잔여쟁점(시장개방 이슈 등) 해소방안 등 참여국 간의 협의를 가졌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1차 공식협상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은 2020. 7. 9(목) 11:0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0여명의 우리측 정부대표단과 RCEP 참여국(ASEAN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협상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1차 공식협상」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지난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법률 검토,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차질 없는 연내 서명을 위해 잔여 이슈'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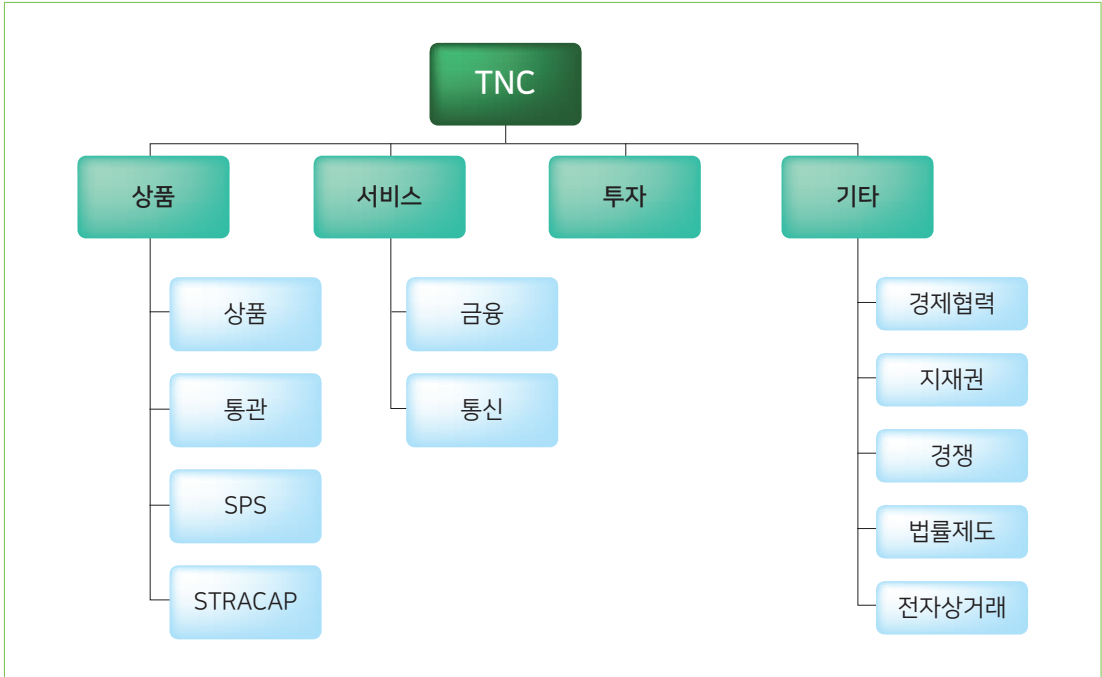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s://www.fta.go.kr/>) 및 보도자료

» RCEP 체결 의의

- 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체결 후 10년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 예상
 - 인구 규모로 세계 최대(22억 명)이자, CP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자 FTA 체결에 다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체 형성에 따른 활용도 제고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

» RCEP 회의체

RCEP 회의체 구성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A 홈페이지(<https://www.fta.go.kr/>)

- (TNC) 수석대표(국·과장급) 간의 전체 회의로 각 작업반은 회의 종료 후 TNC에 결과 보고
- (작업반)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등 8개로 구성된 작업반 설치
- (상품 소작업반) 상품 작업반 하에 원산지, 통관, SPS, STRACAP(=TBT) 등 4개의 소작업반 설치, 회의 후 상품작업반에 결과 보고
- (서비스 소작업반) 금융, 통신 등 2개로 이루어진 서비스 소작업반 설치

» RCEP 협정문 구성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RCEP 협정문 구성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적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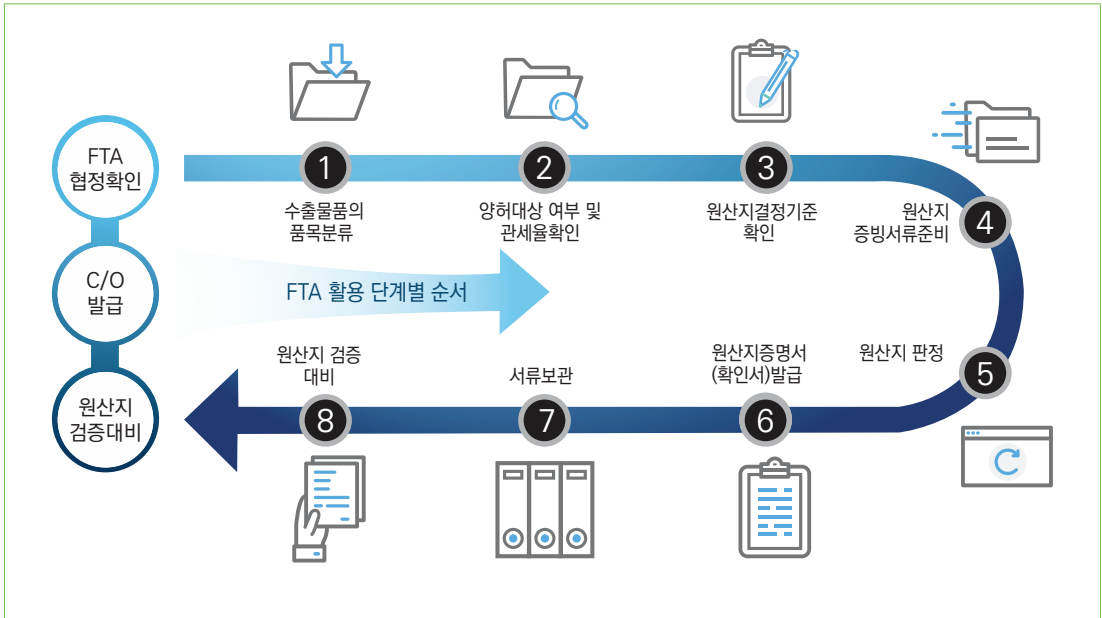
제20장 최종 규정

자료 : RCEP 협정문

4

RCEP 적용 절차

» 일반적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 FTA 활용 단계별 상세 내용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국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는데,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국가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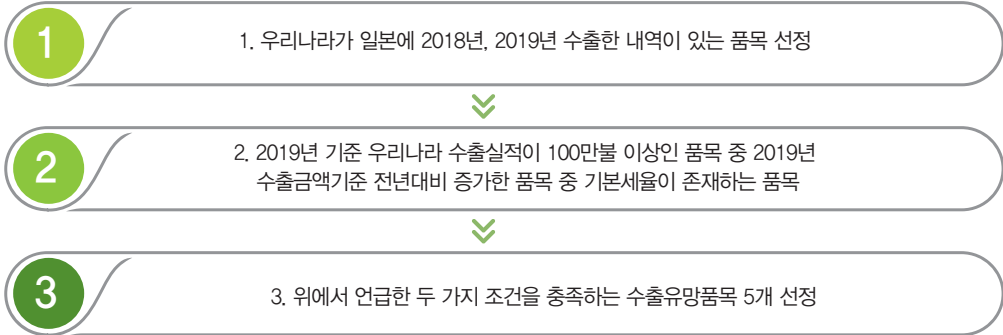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검증을 요청받은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선정과정 및 리스트



■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출된 RCEP 활용 가능성이 높은 對일본 수출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음

RCEP 활용 對일 수출유망품목

[단위 : 천불, 위, %]

연번	HS 6단위	품명	對일 수출금액		수출품목 순위	수출 증감률 (2018 - 2019)
			2018년	2019년		
1	2841.90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의 물품	93,595	354,367	6	278.6
2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99,726	103,195	47	3.5
3	3906.90	아크릴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물품	49,532	66,586	70	34.4
4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9,564	30,429	185	2.9
5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9,919	28,284	197	18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의 물품

	물품명 (HS 6단위)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의 물품 (2841.90)
	주요 용도	이차전지용 양극 활물질 제조용
	2018-2019년 對일 수출 증감률(%)	278.6
	2020년 일본기본세율(%) ¹⁾	3.9

주1)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0년 관세율표

주요 원재료(예시)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원산지	가격비중(%)
1	SPENT REFINERY CATALYST, MOLYBDENUM, COBALT, NICKEL RESIDUE IN CO, NI-MO SPENT CATALYSTS	2620.99	미상	-
2	탄산이나트륨	2836.20	미상	-
3	마그네슘 염화물	2827.31	미상	-
4	염화암모늄	2827.10	미상	-
5	암모니아수	2814.20	미상	-
6	염화수소(염산)	2806.10	미상	-

제조공정


원재료 칭량 > 비율에 맞게 투입 >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 비원산지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함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함.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을 경우 특정국가에서 수행된 역내가가치가 40%이상일 경우 원산지 지위획득이 가능함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비원산지 주요원재료 가격 비중이 완제품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격을 관리할 필요 있음

(3)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물품

	물품명 (HS 6단위)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의 물품(3906.90)
	주요 용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2018-2019년 對일 수출 증감률(%)	34.4
	2020년 일본기본세율(%)	4.1/4.6

주요 원재료(예시)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원산지	가격비중(%)
1	메타아크릴과 그 염	2916.13	미상	-
2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4	미상	-
3	수산화나트륨	2815.11	미상	-
4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40	미상	-
5	트리에탄올아민	2922.15	미상	-

제조과정

원재료 칭량 > 비율에 맞게 투입 >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 비원산지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함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함.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을 경우 특정국가에서 수행된 역내가가치가 40%이상일 경우 원산지 지위획득이 가능함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비원산지 주요원재료 가격 비중이 완제품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격을 관리할 필요 있음

(5)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물품명 (HS 6단위)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209.00)
	주요 용도	가공식품 조미용 등에 식용으로 사용
	2018-2019년 對일 수출 증감률(%)	185.2
	2020년 일본기본세율(%)	8

주요 원재료(예시)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원산지	가격비중(%)
1	스테비오사이드	2938.90	미상	-
2	옥수수(NON-GMO)	1005.90	미상	-
3	제2인산암모늄	2835.29	미상	-
4	제1인산칼륨	2835.24	미상	-
5	황산마그네슘	2833.21	미상	-
6	이스트엑기스	2102.10	미상	-
7	석류농축액	2009.89	미상	-
8	사과농축액	2009.79	미상	-
9	배소텍스트린C(CYD)	3505.10	미상	-

제조과정

원재료 준비 > 비율에 맞게 투입 > 1개당 용량에 맞게 포장 >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 비원산지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함

<참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앞 네 자리와 완제품의 앞 네자리 세번이 달라져야 함

-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앞 두자리와 완제품의 앞 두자리 세번이 달라져야 함
- CTS(6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앞 여섯자리와 완제품의 앞 여섯자리 세번이 달라져야 함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Ⅲ

일본 FTA·EPA 및 통관제도

제1절 일본 통관 조직

제2절 일본 통관 제도

제3절 일본 관세

제4절 일본의 FTA·EPA

제5절 일본의 FTA·EPA 활용방법 및 절차

제6절 우리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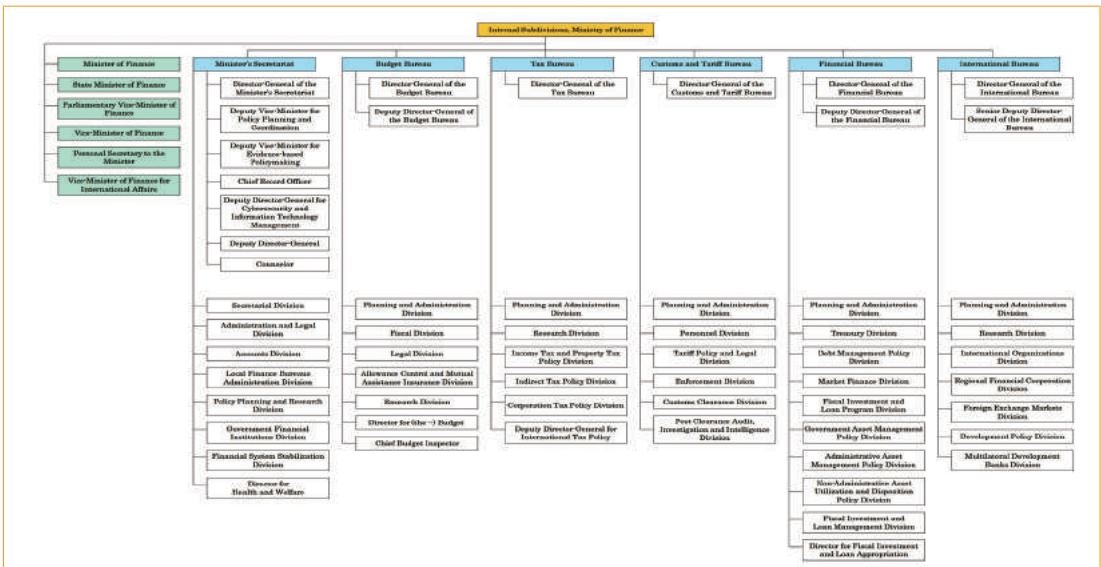
1

일본 통관 조직

»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Japan, 財務省)⁵⁾

- 일본의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MOF)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무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임
 - 1868년, 정부운영을 위한 최초의 자금조달기관인 금곡출납청이 설치된 이후 회계관, 대장성 등으로 몇 번의 개명 및 중앙성청 개편을 거쳐 2001년, 현재와 같은 재무성이 설립됨
 - (설립목적) 국민 시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치 실현을 통한 나라의 재무 종합 운영·관리, 건전한 사회 실현 및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의 공헌
 - (주요역할) 건전한 재정의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세관 업무 운영 및 국고 관리, 외환 및 통화의 안정 유지 등(법적근거: 재무성설치법)
- 재무성(MOF)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본성은 내부부국·시설 등기관·지방지분부국 등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재무성(MOF) 조직도



자료 :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go.jp/>)

- 이 중 관세 및 통관 관련 행정업무는 재무국 본성의 하위기관인 내부부국 산하 ‘관세국’과 지방지분부국 산하 ‘세관’이 주관하고 있음

» 일본 관세국(Japan Customs, 関税局)⁶⁾

■ 일본은 관세행정조직 유형으로 중앙부처 내 단일국이 설치된 관세국(Customs Department, CD)형 모델을 택하고 있음

- 관세국형 모델이란 대부분의 부서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또는 Ministry of Treasury)에 속하여 국가의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함
 - 일본과 같이 관세국형 모델을 운영 중인 주요 국가로는 독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알제리, 파키스탄, 대만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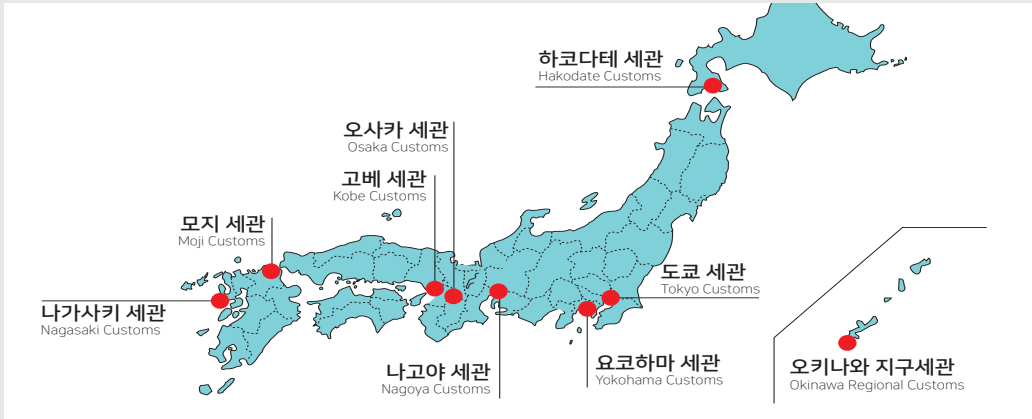
* 참고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조직은 관세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독립된 중앙 행정기관(관세청)을 운영하는 형태인 관세청(Customs Agent, CA)형 모델임

■ 재무성 내부부국 하위기관인 관세국은 관세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운영하며,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한 간접세 징수도 담당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관세국 모델에서 세관은 관세국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세 행정의 집행에 있어 현장 세관의 재량이 큰 것이 주요 특징임
 - 전형적인 관세국 모델의 관세행정조직인 일본은 관세국이 관세 정책·집행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모습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 관세율 결정 등 관세 정책기능은 주로 관세국에서 담당하며 집행기능은 도쿄 세관 등 9개 세관에서 실질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관세국은 수입물품과 관련한 세금인 관세부터 부가세(VAT)·소비세 등의 기타 간접세까지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기타 간접세의 집행 기능 역시 각 지역세관에서 담당함
 - **(일본세관 위치)** 하코다테(Hakodate), 도쿄(Tokyo), 요코하마(Yokohama), 나고야(Nagoya), 오사카(Osaka), 고베(Kobe), 모지(Moji), 나사사키(Nagasaki), 오키나와(Okinawa) (총 9개)

☑ 일본의 세관

- 보통 무역의 최전선인 항구에 위치하는 세관은 일본의 주요 항구가 있는 9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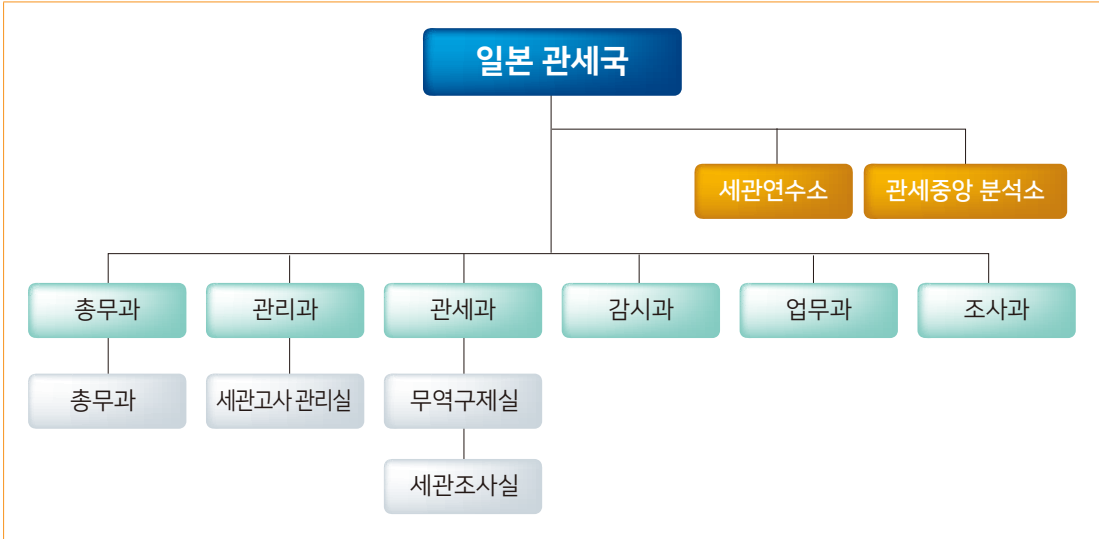
일본 세관별 주소 및 관할 지역 안내

구분	상세 정보	
하코다테 세관	주소	Hakodate Kowan Godochosha, 24-4 Kaigan-cho Hakodate-shi Hokkaido
	관할권	Hokkaido, Aomori, Iwate, and Akita
도쿄 세관	주소	Tokyo Kowan Godo Chosha 2-7-11 Aomi Koto-ku Tokyo
	관할권	Yamagata, Gunma, Saitama, Chiba(Part), Tokyo, Niigata, and Yamanashi
요코하마 세관	주소	1-1 Kaigandori Naka-ku Yokohama-shi Kanagawa
	관할권	Miyagi, Fukushima, Ibaraki, Tochigi, Chiba(Part), and Kanagawa
나고야 세관	주소	2-3-12 Irifune Minato-ku Nagoya-shi Aichi
	관할권	Nagano, Gifu, Shizuoka, Aichi, Mie
오사카 세관	주소	4-10-3 Chikko Minato-ku Osaka-shi Osaka
	관할권	Toyama, Ishikawa, Fukui, Shiga, Kyoto, Osaka, Nara, and Wakayama
고베 세관	주소	12-1 Shinkocho Chuo-ku Kobe-shi Hyogo
	관할권	Hyogo, Tottori, Shimane, Okayama, Hiroshima, Tokushima, Kagawa, Ehime, and Kochi
모지 세관	주소	Moji kowangodochosha 1-3-10 Nishikaigan Moji-ku Kitakyushu-shi Fukuoka
	관할권	Yamaguchi, Fukuoka(Part), Saga(Part), Nagasaki(Part), Oita, and Miyazaki
나가사키 세관	주소	1-36 Dejimamachi Nagasaki-shi Nagasaki
	관할권	Fukuoka(Part), Saga(Part), Nagasaki(Part), Kumamoto, and Kagoshima
오키나와 지구세관	주소	Tsubogawa Bldg 3F, 3-2-6 Tsubogawa, Naha-shi, Okinawa
	관할권	Okinawa

자료 :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https://www.mof.go.jp/>)

- 일본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세행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국은 총무과, 감시과, 업무과, 조사과 등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관세국(Customs) 조직도



자료 :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요약), 관세청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6)

일본 관세국(Japan Customs)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의 소관 사무의 종합 조정 • 직원의 임용, 복무, 인사 및 급여 • 세관에 대한 홍보 및 광청(広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행정 재산 및 물품 관리 • 직원 복리 후생
감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의 감시 단속 • 수출입 화물에 관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승무원의 휴대 등의 단속 검사 및 부과금 • 보세구역 등의 허가 또는 승인 및 단속
업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화물에 관한 심사 비준 및 승인 • 수출입 화물의 분석 감정 •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및 통관사 시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화물에 관한 관세 등의 세율 확정 및 징수 • 국제 우편물의 검사 및 부과금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화물의 조사 • 정보 관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 • 무역통계의 작성

자료 : 국가별 통관정보(일본), 의류기기통합정보(BANK);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

2

일본 통관 제도

» 일본 통관법률 체계⁷⁾

- 일본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통관 관련 법률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임

* 장(章), 절(節), 관(款), 조(條)로 구성된 4단계 체계

**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법률

- (일본 통관법률) 일본의 관세법률은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등 4개의 법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일본의 통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관세법	부과·징수, 수출입 물품의 세관절차, 벌칙, 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관세정률법	관세율,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관세감면, 면세, 환급, 부당염매방지관세·긴급관세, 상계관세·보복관세·대항관세
관세 잠정조치법	일시적·잠정적인 관세율의 특례 규정(특혜, 긴급 관세), 잠정세율, 관세할당,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개도국특혜관세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세관절차의 전자통관, 통관 정보처리센터 조직·운영

자료 : 新통관절차법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19)

- (① 관세법) 일본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납부·징수 및 환급, 화물의 수출입에 관한 세관절차 등 통관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1954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20년 3월에 이루어진 바 있음
- (② 관세정률법) 1910년 제정된 관세정률법은 관세의 세율,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관세의 감면·환급, 기타 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순수한 세법으로 관세법과 형식적으로는 독립하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③ 관세잠정조치법) 관세법과 관세정률법의 잠정적인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1960년 제정된 관세잠정조치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④전자정보처리 특례법) 세관의 전자통관 및 통관정보처리센터 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NACCS법’ 등의 약어로 불리기도 함

- ☑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 : <https://www.e-gov.go.jp/>
일본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령(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로 최근 개정된 관세법의 전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일본 관세법 최신 개정 내용 및 전문 확인 바로가기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61
- ☑ **일본 관세정률법 최신 개정 내용 및 전문 확인 바로가기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61
- ☑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최신 개정 내용 및 전문 확인 바로가기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61
- ☑ **일본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법률 최신 개정 내용 및 전문 확인 바로가기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61



3

일본 관세

» 관세의 부과⁸⁾

- 일본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등 3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인 관세율은 일본 관세국(關稅局)에서 실행관세율표(實行關稅率表)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코드 및 수입국 실행 관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일본의 품목분류코드 및 실행 관세율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일본은 9자리의 품목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는 최종 9자리를 기준으로 부과됨
 - 일본 품목분류코드 9자리 중 앞의 6자리는 세계 공통 분류체계인 HS코드이며, 뒤의 3자리가 일본 품목분류 상세 코드에 해당함

일본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공통 (6자리)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21	- Horses : -- Pure-bred breeding animals
일본 (9자리)	0101.21-100	---- 1 Certified as being those other than Thoroughbred, Thoroughbred-grade, Arab, Anglo-Arab or Arab-grade hor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ght-breed hor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abinet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Customs Tariff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binet Order")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따라서 앞의 6자리는 한국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뒤 3자리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의미
4	일반특혜세율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도국 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우대조치로, 무차별·비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호혜적인 특혜관세와 구별됨
5	특별특혜세율 (Least Developed Country)	특혜 관세 중에서도 후발개도국(LDC)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6	EPA, FTA 등 협정세율 (Conventional Tariff)	일본과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일반 관세보다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자료 : KOTRA, TradeNavi, 일본세관(검색일: 2020. 9월)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율인 관세는 부과 대상물품의 원산국, 수량·기간·증명여부 등 여러 가지 특정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인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일본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구분	관세율 종류	구분	요건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관세의 부과 → 기본관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과	- 부과 대상의 조사 및 선정 -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 별로 부과
2순위 2순위	WTO 협정세율	최혜국대우원칙 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 →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	- WTO회원국에 적용(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적용대상임)
	EPA, FTA 등 협정세율	EPA, FTA 등 협정 상대국에 부과 →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	- EPA, FTA 등 특혜세율 적용 요건 충족 -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적용 - 한국은 적용대상 아님
3순위	잠정세율	관세잠정조치법 별표에서 정한 물품에 부과 →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적용	- 관세잠정조치법 별표에서 기간별로 지정한 부과대상 물품
4순위	기본관세율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자료 : TradeNavi

» 관세율의 형태¹⁰⁾

■ 일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종가세를 택하고 있으나, 종량세와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형인 혼합세를 모두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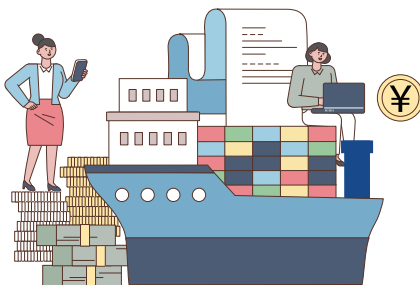
- 관세는 가격이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이 중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형태를 '종가세', 수량으로 하는 형태를 '종량세'라고 함

일본 관세율의 형태

구 분		의 미
1	종가세 (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2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종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3	혼합세 (Compound duty)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세율

자료 : TradeNavi; 일본 관세제도, 과채류공동수출연구사업단; 일본세관(검색일: 2020. 9월)

- **(종가세)**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형태로 관세가 물품의 가격과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물품 가격 변동 시 관세율도 함께 변화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물품의 적정가격 파악이 곤란하고 물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관세액도 낮아져 관세의 국내 산업 보호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 **(종량세)** 종가세와 달리 수입품 가격이 관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소 쉽게 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가 변동 시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혼합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형태인 혼합세는 다시 동일한 품목에 한쪽의 세율만을 적용하는 선택세와 양쪽 세율을 모두 적용하는 복합세로 나뉨



4

일본의 FTA · EPA

»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¹¹⁾

- 일본의 경우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FTA라 할 수 있음
 - EPA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유화,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및 자유화를 강조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그 성격이 거의 같음
 - 일본은 협정 체결국과 광범위한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EPA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FTA도 관세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범위의 자유화를 포괄하고 있어 EPA와 FTA 간 경계가 더욱 모호해짐
 - 일본 정부기관 외무성(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도 최근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FTA가 많아져 FTA와 EPA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일된 FTA 및 EPA 정의는 없으나 다음은 일본 외무성에서 서술한 FTA·EPA의 정의임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

구분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 Trade Agreement •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서 물품의 관세, 서비스 무역장벽 등을 삭감·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경제연계협정(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사람의 이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 정책의 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요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자료 :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일본의 FTA · EPA 추진 현황¹²⁾

■ 2020. 11월 기준, 일본은 47개의 국가 또는 지역과 총 18개의 FTA · EPA를 발효함

일본의 FTA · EPA 체결 현황

발효(18)	협상 중(4)	검토 중(2)
일-싱가포르 EPA	RCEP ²⁾	FTAAP ⁵⁾
일-멕시코 EPA	일-터키 EPA	일-뉴질랜드 FTA
일-말레이시아 EPA	일-콜롬비아 EPA	
일-칠레 EPA	한중일 FTA	
일-태국 EPA	협상 중단(3)	
일-인도네시아 EPA	한-일 FTA	
일-브루나이 EPA	GCC ³⁾ FTA	
일-ASEAN EPA	MERCOSUR ⁴⁾ TA	
일-필리핀 EPA		
일-스위스 EPA		
일-베트남 EPA		
일-인도 EPA		
일-페루 EPA		
일-호주 EPA		
일-몽골 EPA		
TPP11(CPTPP) ¹⁾		
일-EU EPA		
일-미국 TA		

자료 :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 주 1) TPP11, CPTPP(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7년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기존 TPP 11개국(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멕시코·캐나다·일본)이 CPTPP로 이름을 변경하고 체결한 협정으로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규모는 인구 5억 명, 전 세계 GDP의 12.9%에 달함
-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2019년 4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고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예정하고 있음
-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으로 구성된 페르시아만 아랍산유국가 간의 지역협력기구
- 4)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경제공동체로 '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줄임말임
- 5)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21개국이 추진하고 있으며 발효될 경우 역내 교역비중이 세계 교역 비중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세계적으로 FTA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GATT/WTO의 다자무역 체제에 축을 둔 통상 정책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FTA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2년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을 시작으로 FTA·EPA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나가는 중임
- **(추진방향)** 일본은 현재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내용(WTO+)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FTA·EP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체결국 간 경제 전반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여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추진목표)** 일본은 자국의 FTA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FTA 시장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55개국과 16건의 FTA 체결) 등의 제3국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및 생산 네트워크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정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 **(추진현황)** 2019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이 타결되었으며,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함)
- **(체결의의)** RCEP 체결시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형성됨
- **(기대효과)**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든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RCEP 체결에 따른 한국 경제적 타당성 평가

양허 시나리오	실질GDP(%)		후생(억 달러)	
	실질GDP(%)	후생(억 달러)	실질GDP(%)	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참고> 한중일 FTA

-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가장 최근 이루어진 협의는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회기간 회의임

한 · 중 · 일 FTA 체결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19. 12. 21	한·중·일 FTA 회기간 회의 개최(베이징)
2019. 11. 27~29	한·중·일 FTA 제1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9. 04. 09~12	한·중·일 FTA 제15차 공식협상 개최(도쿄)
2018. 12. 06~07	한·중·일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북경)
2018. 03. 22~23	한·중·일 FTA 제13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17. 04. 10~13	한·중·일 FTA 제12차 공식협상 개최(동경)
2017. 01. 09~11	한·중·일 FTA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북경)
2016. 06. 27~28	한·중·일 FTA 제10차 수석대표협상 개최(서울)
2016. 04. 05~08	한·중·일 FTA 제10 실무협상 개최(서울)
2016. 01. 18~19	한·중·일 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도쿄)
2015. 12. 14~18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 개최(하코네)
2015. 09. 23~25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베이징)
2015. 07. 20~24	한·중·일 FTA 제8차 실무협상 개최(베이징)
2015. 05. 12~13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 개최(서울)
2015. 04. 13~17	한·중·일 FTA 제7차 실무협상 개최(서울)
2015. 01. 16~17	한·중·일 FTA 제6차 수석대표협상 개최(도쿄)
2014. 11. 24~28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 개최(도쿄)
2014. 09. 01~05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개최(베이징)
2014. 03. 04~07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13. 11. 26~29	한·중·일 FTA 제3차 협상(동경)
2013. 07. 29~08. 02	한·중·일 FTA 제2차 협상(상하이)
2013. 03. 26~28	한·중·일 FTA 제1차 협상(서울)
2012. 11. 20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프롬펜)
2012. 05. 13	한·중·일 정상회의(북경) 시 3국 정상외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한 작업을 즉시 개시키로 합의
2011. 12. 16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2011. 12. 14~16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 개최(평창)
2011. 08. 31~09. 0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6차 회의 개최(중국, 창춘)
2011. 06. 27~28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일본, 기타큐슈)
2011. 03. 30~04. 0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10. 12. 01~0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웨이하이)
2010. 09. 01~0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동경)
2010. 05. 06~07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10. 01. 26	한·중·일 산관학 준비회의 개최(서울), 공동연구 운영규칙(TOR) 등 협의
2009. 10. 25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시 2010년 상반기 중(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및 이를 위한 준비회의를 2010년 초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
2009. 10. 10	한·중·일 정상회의 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3~2009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 12. 22(일) 현지시간 18:00 중국 베이징 조어대 백일홀에서 가지야마 히로시(Kajiyama Hiroshi)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중산(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 : 산업자원통상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s://www.fta.go.kr/>) 및 보도자료

5

일본의 FTA · EPA 활용방법 및 절차

- 2020년 11월 기준, 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자 일본과 최초의 협정인 RCEP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음
 - RCEP 체결은 이제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특혜협정 세율의 적용이 가능해진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가짐
 - RCEP 15개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
 - 일본은 우리나라와 이미 교역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므로 RCEP 체결 시 FTA 활용 수요는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 FTA · EPA 활용과 관련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이에 RCEP 발효 시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일본의 FTA 현황 및 활용 방법 ·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함

» 일본 FTA · EPA 활용을 위한 기본 요건¹³⁾

- 일본 수출입 시 일본이 체결한 FTA · EPA를 활용할 경우 평소보다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은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기본요건) FTA · EP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입 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자 원산지 상품이고, 직접운송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

일본 FTA · 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의 4가지 기본요건

구분	의미
① 특혜관세 대상	적용받고자 하는 FTA · EPA 협정문(일본이 체결한 대부분 EPA부속서 1)에서 특혜관세 대외제상 또는 재협상 대상품목이 아닌, 특혜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어야 함
② 원산지 상품	해당 FTA · EPA에서 규정된 물품의 원산지규정(품목별 및 일반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직접 운송	해당 FTA · EP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함
④ 증명 능력	해당 물품이 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상업증장, 선하증권 사본, 비가공증명서 등)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자료 : JETRO(<https://www.jetro.go.jp/>)

» 일본 FTA · EPA 활용 절차¹⁴⁾

일본 FTA · EPA 활용 절차

① FTA · EPA 체결 여부 확인

FTA · EPA는 계약 당사국 간의 교역에만 적용되므로, 일본 FTA · EP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수출국이 일본과 FTA · EPA를 체결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함

② HS CODE(세번) 확인

다음으로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HS CODE는 5년 주기로 개정되며 협정마다 HS CODE의 기준연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에서 특정한 연도의 HS CODE를 작성해야 함

③ 관세율 확인

다음은 해당 물품을 일반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MFN세율)과 FTA · EPA를 활용하여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FTA · EPA 특혜세율)을 비교하고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함

④ 원산지 규정 및 충족 여부 확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⑤ 수입신고 및 서류 제출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국 세관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및 FTA · EPA 특혜 적용 신청을 완료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FTA · EP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면제)된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자료 : JETRO(<https://www.jetro.go.jp/>)

■ 일본 FTA·EP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앞의 「일본 FTA·EPA 활용 절차」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면 됨

- FTA·EPA는 각 협정마다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협정별로 상세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위 ①부터 ⑤까지의 절차는 거의 모든 FTA·EPA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각 기업 실무자들은 위 절차를 숙지하여 모든 FTA 활용 시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다음에서는 일본의 FTA·EPA 활용 방법을 보다 중심으로 하여 각 절차별 상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함

» 일본 FTA·EPA 활용 상세 절차¹⁵⁾

① FTA·EPA 체결 확인

■ 일본 수출입에서 FTA·E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과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국가 간에 FTA·EPA가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일본 FTA·EPA 체결국) ASEAN(10개국), 멕시코, 칠레, 스위스, 인도, 페루, 호주, 몽골, 뉴질랜드, 캐나다, EU(28개국)* 등 총 47개국임**

* 브렉시트로 2021. 1. 1일부터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임

** 2020. 9월 현재 기준

- 현재 한-일 간에는 FTA·EPA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FTA·EPA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만약 위 47개국(일본과 FTA·EP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FTA·EPA 관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또한 추후 RCEP이 발효될 경우에는 한-일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FTA·EPA에서 HS코드는 보통 세계 공통인 6단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HS 코드는 5년마다 개정되며 협정마다 기준연도를 달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FTA·EPA를 적용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등에는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연도의 HS코드를 기재해야 함

일본이 체결한 협정별 HS 기준연도

HS 2002	HS 2007	HS 2012	HS 2017
일-싱가포르 EPA	일-스위스 EPA	일-호주 EPA	일-EU EPA
일-멕시코 EPA	일-베트남 EPA	일-몽골 EPA	일-미 TA
일-말레이시아 EPA	일-인도 EPA	TPP11(CPTPP)	
일-칠레 EPA	일-페루 EPA	RCEP	
일-태국 EPA			
일-인도네시아 EPA			
일-브루나이 EPA			
일-ASEAN EPA			
일-필리핀 EPA			

자료 : JETRO(<https://www.jetro.go.jp/>) 및 각 협정문

■ 또한 동일 물품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국 세번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함

- 물품의 최종 HS CODE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국가마다 물품을 보는 관점,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국가 간 HS CODE가 상이할 수 있음
 -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서로 다를 때 수출국 세번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수입국 세관은 서류상 기재된 HS CODE와 실제 물품의 HS CODE가 달라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이 일치하는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음
- 특히 특혜협정에서는 수출국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입국 세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입국 HS 코드를 확인해야 함

③ 관세율 확인

■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세율 확인이 필요함

-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은 MFN 세율과 EPA 특혜세율이 있음
 - **(MFN 세율)** 일본과 FTA·EPA를 체결하지 않은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로, 일본의 품목분류체계인 HS CODE 9단위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일본 실행관세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FTA·EPA 특혜세율)** 일본과 FTA·EP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FTA·EPA 특혜 적용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로, 체결국 간 양허대상 물품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있으며 세율은 각 협정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협정문의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일본 양허표 확인 방법

- 양허표란 각 FTA·EPA에서 규정한 품목별 관세철폐 및 인하 계획을 나타낸 표를 뜻함
- 일본이 체결한 EPA의 양허표를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ex. 일-인도네시아 EPA 양허표 (각 협정별로 양허표의 내용 및 배치가 다를 수 있음)

Column 1 HS코드	Column 2 품명	Column 3 기준세율(Base Rate)	Column 4	Column 5
Tariff Item Number	Description of Good	Base Rate	Category	Notes
70.14	Signalling glassware and optical elements of glas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70.15), not optically worked.			
7014.00.10.00	- For motor vehicles	5%	B3	2
7014.00.90	- Other:		A	
7014.00.90.10	-- For lighthouse lamps, ships lanterns, locomotive and railway rollingstock lanterns, lamps for aircraft and beacons			
7014.00.90.90	- Other	5%	B3	

Column 4
양허유형

Column 5
양허유형의 주(참고)

일본 FTA · EPA 양허유형 구분

양허유형	의미
A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무관세(즉시 철폐)
B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매년 균등 인하 · 철폐(단계적 관세 인하 · 철폐) ex 기준세율(Base Rate) 5%, 양허유형 B3 → 5%의 세율을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3년차부터 무관세)
P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비균등 관세 인하 · 철폐(단계적 관세 인하 · 철폐)
Q	관세 할당(TRQ, 수출자가 발급한 증명서 필요)
R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을 거쳐 관세 철폐 등을 협상(재협상 품목)
X	관세의 인하 · 철폐 등을 양허하지 않음(무관세 지속, 양허제외)

주: 알-인도네시아 EPA를 기준으로 함(각 협정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 : 일본 상공회의소(<https://www.jcci.or.jp/>)

- 일본세관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을 종합하여 안내하고 있음

- ☑ **일본 품목별 실행관세율(MFN/FTA · EPA) 확인 바로가기(2020.6.27 업데이트 기준)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0_6/index.htm

The screenshot shows the Japan Custom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Skip to Content', 'Site Map', and 'Japanese'. Below this is the 'Japan Customs' logo and a search bar. A menu bar contains 'Home', 'Passenger', 'Export / Import', 'Enforcement', 'Trade Statistics', and 'Customs Answer (FAQ)'. Underneath, there are regional custom offices listed: Hakodate, Tokyo, Yokohama, Nagoya, Osaka, Kobe, Moji, Nagasaki, and Okinawa.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June 27 2020'. A disclaimer states: 'This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not for official use. Please refer to the relevant statutory publications in Japanese for confirmation. If you have an inquiry regarding customs formalities, etc., please feel free to ask a customs counselor at the nearest Customs office.' Below the disclaimer, there is a section for 'Abbreviation of unit' and 'SECTION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A table lists five chapters with their descriptions and links to 'Tariff rate' pages.

Chapter	Description	Link
Chapter 1	Live animals.	Tariff rate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Tariff rate
Chapter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Tariff rate
Chapter 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Tariff rate
Chapter 5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Tariff rate

④ 원산지 규정 및 충족 여부 확인¹⁶⁾

■ FTA·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자격을 갖춘 ‘특혜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 FTA·EPA는 WTO 최혜국대우와 달리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한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협정별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을 ‘특혜 원산지 제품’이라고 함
 - 모든 FTA·EPA 협정에서 보통 특혜 원산지 제품은 완전 생산품,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규정됨
 - 그러나 원산지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특혜 협정에서 품목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일본 상공회의소 및 일본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이 체결한 FTA·EP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일본이 체결한 EPA 협정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음
 - 보통 일본이 체결한 FTA·EPA 협정문 상 원산지 규정은 제3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 **일본 수출물품에 관한 규칙 확인 링크(일본 상공회의소) :**
<https://www.jcci.or.jp/gensanchi/3.html>

✔ **일본 FTA·EPA 원산지 규정 포털(일본 세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공) :**
<https://www.customs.go.jp/searchro/jrosv001.jsp>

■ 또한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자격을 갖춘 ‘특혜 원산지 제품’이라는 사실을 수입국 관세당국인 일본 세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때 물품이 FTA·EPA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특혜 원산지 증명서’임
- 일본의 EPA 특혜 원산지증명 제도는 제3자 증명제도, 인증수출자제도, 자율증명제도(자기신고제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일본 특혜 원산지증명 제도

구분	① 제3자 증명제도	②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	③ 자율증명제도
주요 내용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스스로 작성·발급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이 가진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
발급자 또는 작성자	일본상공회의소 (단, 일-싱가포르 EPA는 상이)	인증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해당 협정	일-싱가포르, 일-인도, 일-아세안, 일-인도네시아, 일-필리핀, 일-말레이시아, 일-멕시코, 일-스위스, 일-페루 등	일-멕시코, 일-스위스, 일-페루(제도①,② 병행) 등	일-호주 등

자료 : 일본 상공회의소(<https://www.jcci.or.jp/>);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jp-ko/>)

- (① 제3자 증명제도) 일본은 「경제연계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일본 상공회의소로 정하고 있음
 - 일본 상공회의소에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서류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야 함
 - 제3자 증명제도에 해당하는 협정으로는 일-싱가포르 EPA, 일-아세안 EPA, 일-필리핀 EPA, 일-멕시코 EPA, 일-스위스 EPA, 일-페루 EPA 등이 있음
 - 제3자 증명방식의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한 협정 중 원산지증명서의 시스템 발급이 가능한 협정은 일-멕시코 EPA, 일-말레이시아 EPA, 일-칠레 EPA, 일-태국 EPA, 일-인도네시아 EPA, 일-브루나이 EPA, 일-아세안 EPA, 일-필리핀 EPA, 일-스위스 EPA, 일-베트남 EPA, 일-인도 EPA, 일-페루 EPA, 일-호주 EPA, 일-몽골 EPA 등이 있음

☑ 일본 제3자 증명방식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방법

- 일본의 제3자 증명방식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링크는 보안상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시스템 발급은 제3자 증명방식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일본 상공회의소 상 “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주소로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한 식별번호·비밀번호 통지서”라는 서면이 도착하게 되는데, 이 통지서에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URL”이 적혀져 있으며, 발급 신청자는 해당 링크를 직접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

- 또한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지정발급기관이 다른 협정들과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일-싱가포르 EPA 특혜 원산지증명서 지정 발급기관 목록 확인 링크 :

<https://www.jcci.or.jp/gensanchi/img/singapore.pdf>

- 다음은 제3자 증명방식의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택하고 있는 협정 중 일부 협정의 필수 기재 사항 및 기재요령을 정리한 표임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제3자 증명방식) 필수 기재 항목 및 요령

구분	EPA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칠레
원산지기준				
완전 생산품	A	A	A	A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상품	B	B	B	B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상품	C	C	C	C
세번변경기준의 특례규정	D	-	-	D
기타 원산지 기준				
누적 기준	ACU	ACU	ACU	ACU
최소허용기준	DMI	DMI	DMI	DMI
대체재	FGM	FGM	FGM	FGM
중간재	IM	-	-	-
품목번호	HS 6	HS 6	HS 6	HS 6
송장 번호 및 날짜				
원칙	협정 상대국의 수입신고서에서 사용하는 송장번호 및 날짜(제3국 송장이 사용 되는 경우 해당 송장번호 및 일자), 제3국 청구서가 발행되는 취지의 문구			

구분	EPA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칠레
발급시 제3국 송장번호 판단 O	(제7란) 제3국 발행 송장번호 및 날짜 (제8란) 제3국 발행 청구서 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발급시 제3국 송장번호 판단 X	(제7란) - (제8란) 제3국 발행 청구서 발행자의 명칭 및 주소(불명의 경우 기재X)		(제7란) - (제8란) 제3국 발행 청구서 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DUPLICATE”	원래 인증서가 비활성화 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언 및 원래 인증서의 발급일 및 번호 기재		
소급 발급	“ISSUED RETROSPECTIVELY”	“ISSUED RETROACTIVELY”		

자료 : 일본 상공회의소(<https://www.jcci.or.jp/>)

- 제3자 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위 필수항목 및 기재요령을 토대로 작성하면 됨
- (②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

* 인증수출자 자격은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멕시코 EPA, 일-스위스 EPA, 일-페루 EPA*의 수출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일-멕시코 EPA, 일-스위스 EPA, 일-페루 EPA의 경우 제3자 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함께 병용하고 있음
- 일본 「원산지증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신청서, 인증신청서의 첨부서류(개인의 경우 호적 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의 사본,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 사항증명서 및 임원 성명 및 약력기재서류, 인증신청자 서약서, 협정 법률 규정 및 준수 서류, 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기재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재요청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며 FAX나 E-mail은 이용할 수 없고,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음

- (③ **자율증명제도**) 자율증명제도 또는 자기신고제도는 일-호주 EPA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로써, 원산지증명을 기존의 제3자 증명제도와 같이 수출국 발급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대신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당해 화물이 일·호주 EPA 상의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서면)’와 원산지 상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EPA 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하에서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 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상대국에도 원산지신고서 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양식은 일본 세관양식 C 제5292호를 사용하여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함
 - 단, 협정상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 양식도 사용 가능
 -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물품의 개요(품명·포장 개수 및 종류·포장 기호 및 번호·중량 및 수량·송장번호 및 날짜·운송화물 정보·관세분류번호·원산지기준·기타 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 정보, 당해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일본 인증수출자 신청서(세관양식 C-5292호) 작성 요령

<原産品申告書記載要領> 税関様式C第 5292号

原産品申告書

(経済上の連携に関する日本国とオーストラリアとの間の協定)

1. 輸出者又は生産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2. 品名、包装の個数及び種類、包装の記号及び番号、重量及び数量、仕入書の番号及び目付並びに積送される貨物を確認するための情報(証明している場合)	3. 関税分類番号(6桁、HS 2012)	4. 適用する原産性の基準(WO, PE, PSR)適用するその他の原産性の基準(DMI, ACU)
5. その他の特記事項	6. 以上のとおり、2.に記載する産品は、経済上の連携に関する日本国とオーストラリアとの間の協定に基づくオーストラリア産原産品であることを表明します。		

品목별로 기재한다.

품명은 이보이스상 품명과 HS 품목분류상 품명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도록 기재한다.

가령, Gross 중량 또는 Net 중량, 물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는 "벌크"로 기재한다.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를 6자리 수준(HS2012년판)으로 기재.

원칙으로 일본에 수입통관에 사용되는 인보이스(제3국 인보이스 제외) 번호·날짜

해당하는 특혜기준(WO, PE, PSR)를 반드시 기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DMI, ACU를 기재한다.

제3국의 인보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제3국 인보이스"의 박스에 체크를 하고, 수입통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자의 정식명칭 및 주소를 기재.

동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을 위탁할 경우는 그 의뢰자.

지필서명 또는 서명형상의 인쇄

本原産品申告書の作成者 (輸入者、輸出者、生産者)

※WO: 完全生産品、PE: 原産材料のみから生産される産品、PSR: 実質的変更基準を満たす産品、DMI: 僅少の非原産材料、ACU: 累積

주: 일-스위스 EPA 인증수출자 신청 예시

자료: 일·호주 EPA 원산지 자기신고제도(자율증명제도)의 활용,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2018)

⑤ 수입신고 및 서류 제출

■ 마지막으로 수입물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물품의 수입자는 일본 세관당국에 수입신고 및 FTA·EP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와 특혜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물품을 인도받음

- 일본 세관당국은 제출받은 서류 및 수입된 물품의 검사를 거쳐 서류 및 물품이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과 인도를 허가함
- 그러나 증빙자료나 수입물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음
 -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거부하는 사유로는 서류의 오기재, 유효기간 경과, 거짓서류, 물품의 부적격 판정 등이 있으며 이 중 유효기간 경과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제3자 증명방식의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있음
 -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대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필리핀 EPA의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사용되어야 함

✔ 일본 EPA 및 특혜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은 일본 상공회의소,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EPA 상담데스크, 경제산업성 및 일본세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일본 EPA 상담데스크 (EPA활용 및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
(TEL) +81 0120-910-385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상담 (EPA 활용 및 인증제도 관련) :
(TEL) +81 03-3582-5651

✔ 경제산업성 원산지증명서실 (인증수출자제도 포함) :
(TEL) +81 03-3501-0539

✔ 일본 상공회의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
(TEL) +81 03-3283-7850



6

우리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

» 일본의 수출입 통관 지원제도 종류

- 일본 세관에서는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입 하는 수출입자들의 편리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수출입 통관 지원제도 종류

종류	내용
① 사전교시제도 (품목분류)	수입 물품의 세율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세번과 관세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② 사전교시제도 (관세평가)	수입 물품의 관세 평가상의 취급(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관세 평가 상의 취급(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③ 사전교시제도 (원산지)	수입 물품의 원산지(관련 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관련 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④ 사전교시제도 (감면세)	수입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해당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⑤ 예비심사제도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승인 또는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이전에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 심사·검사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
⑥ 납부기한 연장제도	수입자가 외국에서 국내(일본)로 도착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 내국 소비세, 지방세 등의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제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
⑦ 특례 수입자 제도(AEO제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에 한해 수입 신고와 납세 신고를 분리해 소득 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⑧ 특정 수출자 제도(AEO제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자가 화물이 놓여있는 장소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보세 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⑨ 세관 상담 제도	일본 수출입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돕고, 이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여 적절한 세관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자료 : 일본 세관(<https://www.customs.go.jp/>)

○ **(구두 및 e-mail 신청)** 품목분류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나 세관창구 접수 등을 통한 구두나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단, 구두 및 e-mail을 통한 품목분류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을 통한 품목분류 사전교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수입신고 심사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e-mail 신청을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한 경우* 제외)

* e-mail을 통해 신청된 품목분류 사전교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해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신청 및 답변 내용을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에 준하는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사전교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두 및 e-mail 신청보다는 서면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음

○ **(NACCS 신청)** 품목분류 사전교시는 일본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이하 'NACCS')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NACCS를 통한 품목분류 사전교시는 서면에 의한 사전교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내용이 수입신고 심사 시 고려됨
- NACCS를 통해 품목분류 사전교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스템을 미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답변서 회신)** 품목분류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신청자가 접수한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세번 및 관세율 등을 판단하여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품목분류 사전교부 신청인에게 교부함

○ **(재심사 신청)** 세관으로부터 회신된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가 교부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양식 C-1001호 「사전교시 회답서에 대한 의견의 신출서·회답서」 1통을 작성하여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를 교부받은 세관으로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일본 세관에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수입자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되거나 e-mail로 신청된 것 중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된 경우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회답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 기간을 180일 이내로 하고 이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 또한 수입화물의 품목분류 사례 중 다른 수입자에게도 특별히 참고가 될 만한 분류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재하고 있음

(https://www.customs.go.jp/tetsuzuki/bunruijirei/bunruijirei_index.htm)

👉 **일본 품목분류 사전교시 공개 정보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jp/searchsv/jitsv001.jsp>

품목분류 사전교시 회답서 주요 내용

항목	의미	예시
등록번호	품목분류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117005661
세관명	품목분류 사전교시 회답을 한 세관	東京(도쿄)
처리일자	품목분류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 및 처리 종료일자	20200826
일반 품명	신청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자연 치즈
세번	신청 물품의 9자리 세번	0406.90-090
관세율	처리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관세율 및 협정 세율(일본 세관당국이 징수하는 금액의 합계 또는 관세 및 조정금의 합계)	기본세율 35%, 협정세율 29.8%
내국세율	처리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내국세율	소비세 6.24%, 지방 소비세 22/78
화물 개요	신청 물품의 개요(형상, 제조방법, 성분, 비율 등)	우유에 유산균, 레닛을 첨가·응고시켜 유청을 제거한 후 성형하여 숙성한 것.(이외 제법, 용도, 재료 등의 내용)
분류 이유	신청 물품이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는 이유	본 제품은 우유에 유산균 효소를 첨가하여 응고시켜 유청을 제거하고 숙성·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406호 및 동표 해설서 내용에 의해 자연 치즈(0406.90-090)로 분류한다.
법령	세관 의견과 관련한 기타 법령 정보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주무부처에 요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등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제도의 장점)** 품목분류 사전교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출입자는 세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가계산의 확실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시에도 물품의 세번·관세율 등을 명확히 하여 수입 통관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 일본 품목분류 사전교시 관련 문의처 안내

구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하코다테 세관	(+81) 0138-40-4716	http://www.hakodate-customs.go.jp/
도쿄 세관	(+81) 03-3529-0700	http://www.tokyo-customs.go.jp/
요코하마 세관	(+81) 045-212-6156	http://www.yokohama-customs.go.jp/
나고야 세관	(+81) 052-654-4139	http://www.nagoya-customs.go.jp/
오사카 세관	(+81) 06-6576-3371	http://www.osaka-customs.go.jp/
고베 세관	(+81) 078-333-3118	http://www.kobe-customs.go.jp/
모지 세관	(+81) 050-3530-8373	http://www.moji-customs.go.jp/
나가사키 세관	(+81) 095-828-8669	http://www.nagasaki-customs.go.jp/
오키나와 세관	(+81) 098-862-8692	http://www.okinawa-customs.go.jp/

※ 주의사항

위 홈페이지 주소는 e-mail을 통한 사전교시 신청용 수신 주소가 아님. 사전교시 신청용 메일 주소는 각 세관의 홈페이지 [세번, 세율의 조회] 또는 [사전교시] 메뉴 안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자는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② 관세평가 사전교시제도

- **(의의)** 관세평가 사전교시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이와 관련한 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세관에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평가 상의 취급(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유효기간)** 세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관세평가 사전교시 답변서는 답변서의 최장 발송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내용은 법률 개정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됨
- **(신청방법)** 거래의 개요 등 필수항목이 기재된 세관양식 C-1000-6호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관세평가 조회용)」 1통과 견본 및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수입이 예정된 세관 또는 가장 가까운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함

○ **(구두 및 e-mail 신청)** 관세평가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나 세관창구 접수 등을 통한 구두나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단, 구두 및 e-mail을 통한 관세평가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을 통한 관세평가 사전교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의 심사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음(e-mail 신청을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한 경우* 제외)

* e-mail을 통해 신청된 관세평가 사전교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해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신청 및 답변 내용을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에 준하는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세관에서는 관세평가 사전교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두 및 e-mail 신청보다는 서면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음

○ **(NACCS 신청)** 관세평가 사전교시는 일본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NACCS를 통한 관세평가 사전교시는 서면에 의한 사전교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내용이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 심사 시 고려됨

- NACCS를 통해 관세평가 사전교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스템을 미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답변서 회신)** 관세평가 사전교시 신청서를 받은 세관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예정 물품의 관세평가 상의 취급 내용을 판단한 후 세관양식 C-1000-9호「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검용)(관세평가 답변용)」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 **(재심사 신청)** 세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검용)(관세평가 답변용)」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양식 C-1001-1호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검용)(관세평가 답변용)에 대한 의견의 신출서」 1통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회신 받은 세관으로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일본 세관에서는 정보의 투명성 및 수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되거나 e-mail로 신청된 것 중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된 경우의 관세평가 사전교시 회답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단, 관세평가 사전교시 회답 내용 공개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일본 관세평가 사전교시 공개 정보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kanzeihyouka/kaitoujirei.htm>

관세평가 사전교시 회답서 포함 항목

항목	의미	예시
답변일	관세평가 사전교시 답변이 작성·교부된 일시	2017년 12월 19일
세관명	관세평가 사전교시 답변을 작성·교부한 세관	모지세관(門司税関)
조회사항	관세평가 사전교시 신청 내용	수입 인증 및 과세 가격 정보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③ 원산지 사전교시제도

- **(의의)** 원산지 사전교시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이와 관련한 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세관에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관련 법령의 적용·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유효기간)** 세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서는 답변서의 최장 발송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내용은 법률 개정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됨
- **(신청방법)** 원재료, 원재료별 품목분류 번호, 국가별 가공내용 및 제조방법 등 필수항목이 기재된 세관양식 C-1000-2호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원산지 조회용)」 1통과 견본 및 증빙 서류(BOM, 제조공정도, 견본, 사진, 도면 등)를 첨부하여 수입이 예정된 세관 또는 가장 가까운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구두 및 e-mail 신청)** 원산지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나 세관 창구 접수 등을 통한 구두나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단, 구두 및 e-mail을 통한 원산지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을 통한 원산지 사전교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수입신고 심사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음(e-mail 신청을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

* e-mail을 통해 신청된 원산지 사전교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해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신청 및 답변 내용을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에 준하는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세관에서는 원산지 사전교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두 및 e-mail 신청보다는 서면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음
- **(NACCS 신청)** 원산지 사전교시는 일본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NACCS를 통한 원산지 사전교시는 서면에 의한 사전교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내용이 수입신고 심사 시 고려됨
 - NACCS를 통해 원산지 사전교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스템을 미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답변서 회신)** 원산지 사전교시 신청서를 받은 세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취급을 판단한 후 세관양식 C-1000-3호「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원산지 답변용)」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함
- **(재심사 신청)** 세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원산지 답변용)」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양식 C-1001호 「사전교시 회답서에 대한 의견의 신출서·회답서」 1통을 작성하여 회답서를 교부 받은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일본 세관에서는 정보의 투명성 및 수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되거나 e-mail로 신청된 것 중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된 경우의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사전교시 신청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
 - 단,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 내용 공개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해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일본 원산지 사전교시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안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하코다테 세관	(+81) 0138-40-4255	고베 세관	(+81) 078-333-3097
도쿄 세관	(+81) 03-3599-6527	모지 세관	(+81) 050-3530-8369
요코하마 세관	(+81) 045-212-6174	나가사키 세관	(+81) 095-828-8801
나고야 세관	(+81) 052-654-4205	오키나와 세관	(+81) 098-943-7830
오사카 세관	(+81) 06-6576-3196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일본 원산지 사전교시 공개 정보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jp/searchao/jaosv001.jsp>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서 주요 내용

항목	의미	예시
등록번호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1201022
세관명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을 한 세관	도쿄(東京)
처리일자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 및 처리 종료일자	20200820
일반 품명	신청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돼지고기(냉장한 것)
세번	신청 물품의 세번 (4자리, 6자리 또는 9자리)	0203.12
답변	아래 특혜 중별에 따른 답변	일미무역협정(日米貿易協定)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특혜 중별	적용되는 세율의 종류	일미무역협정(日米貿易協定)
화물 개요	사전교시에서 조회된 화물의 개요(제조 시 사용된 재료 및 제조공정 및 당해가공이 행해진 국가 등)	원재료 : 돼지 / 제조공정 : 도축된 돼지를 미국의 가공공장에서 분할하여 냉장한 것
답변 이유	해당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 이유	상기 물품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관세율표 제020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일-미 무역협정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인 "CC"를 충족하여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상기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며,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일-미 무역협정 상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이하 생략)
법령	해당 원산지 사전교시 회답 내용의 관련 법령 및 근거	일미무역협정 부속서 I 제C절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장점)** 원산지 사전교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출입자는 수입 예정물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 적용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원가 계산 및 판매 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시 답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신속한 수입신고 처리함으로써 화물을 보다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음

○ **(구두 및 e-mail 신청)** 감면세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나 세관창구 접수 등을 통한 구두나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단, 구두 및 e-mail을 통한 감면세 사전교시의 신청은 서면을 통한 감면세 사전교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수입(납세)신고 심사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e-mail 신청을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

* e-mail을 통해 신청된 감면세 사전교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해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신청 및 답변 내용을 서면을 통한 사전교시에 준하는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세관에서는 감면세 사전교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두 및 e-mail 신청보다는 서면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있음

○ **(NACCS 신청)** 감면세 사전교시는 일본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 NACCS를 통한 감면세 사전교시는 서면에 의한 사전교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내용이 수입(납세)신고 심사 시 고려됨
- NACCS를 통해 감면세 사전교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스템을 미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답변서 회신)** 감면세 사전교시 신청서를 받은 세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감면세 답변용)」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함

○ **(재심사 신청)** 세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감면세 답변용)」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양식 C-1001-2호 「사전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감면세 답변용)에 대한 의견의 신출서」 1통을 작성하여 회답서를 교부받은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일본 세관에서는 정보의 투명성 및 수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되거나 e-mail로 신청된 것 중 서면 조회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된 경우의 감면세 사전교시 회답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단, 감면세 사전교시의 신청자 및 거래 관계자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세 사전교시 회답 내용 공개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0일 이내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일본 감면세 사전교시 공개 정보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genmenzei/kaitoujirei.htm>

감면세 사전교시 회답서 포함 항목

항목	의미	예시
답변일	감면세 사전교시 답변이 작성·교부된 일시	2019년 3월 20일
세관명	감면세 사전교시 답변을 작성·교부한 세관	도쿄세관(東京税関)
품명	신청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직물(건본)
화물 개요	사전교시에서 조회된 화물의 개요 (화물 성상, 내용, 크기, 용도 등)	성상 : 인테리어용(의자/소파용) 쿠션 직물 건본, 내용 : 인테리어용 직물 건본의 크기로 재단하고 뒷면에 접착 심지를 붙여 가공 후 여백에 상품명 및 색상번호등을 라벨링한 것 등
답변	감면세 적용 여부	관세 정률법 제14조 제6호의 규정의 적용이 가능 하다.
법령	답변 내용의 근거 법령	관세정률법 제14조 제6호
답변 이유	물품의 감면세 적용 여부를 답변으로 판단한 이유	본 제품의 성질, 내용, 용도에 따라 건본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⑤ 예비심사제도

- **(의의)**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승인 또는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이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 심사·검사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신선 물품, 거래처 납기기한이 엄격한 물품이나 사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물품(시즌상품),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많은 경우 등 수입통관 시간을 절약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편리함
 - 만일 빠른 통관을 원하나 검사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심사제도와 비슷한 제도인 즉시수입 허가제도를 이용하면 됨
- **(장점)** 서류심사가 물품의 도착 전에 이루어지며,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 해당 절차가 세관 수속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또한 수입신고 전에 검사의 필요여부가 통지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음

- **(이용대상)** 모든 수입화물
- **(제출서류)** 예비 신고서(수입 납세신고서 사용), 청구서,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제출기관)** 화물 도착 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 **(신고시기)** 예비신고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외국 환율이 공시된 날 또는 여분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화물의 선하증권(B/L)이 발행된 날 중 늦은 날

☑ 일본 예비심사제도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안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하코다테 세관	(+81) 0138-40-4258	고베 세관	(+81) 078-333-3086
도쿄 세관	(+81) 03-3599-6337	모지 세관	(+81) 050-3530-8367
요코하마 세관	(+81) 045-212-6150	나가사키 세관	(+81) 095-828-0126
나고야 세관	(+81) 052-654-4085	오키나와 세관	(+81) 098-862-9291
오사카 세관	(+81) 06-6576-3314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⑥ 납부기한 연장제도

- **(의의)** 수입자가 외국에서 국내(일본)로 도착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 내국소비세, 지방세 등의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제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임
- **(장점)** 관세 등의 제세를 납부가 연장되어 수입자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유형)**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개별 연장방식, 포괄 연장방식, 특례 연장방식의 3가지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 **(개별연장방식)** 개별 수입신고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세관양식 C-1003호「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검용) 납부 기한 연장(개별) 신청서」 1통과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수입 허가 다음날부터 3개월 간 제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방식임

- **(포괄연장방식)** 특정 월분의 수입신고에 대해 수입자가 해당 특정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세관양식 C-1004호 또는 C-1005호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 기한 연장(종합) 신청서」 1통과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동시에 제공하면, 해당 특정 월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간 제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방식임
- **(특례연장방식)** 특례 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특례수입자가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세관양식 C-1006호 「관세(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 기한 연장(특례 신고) 신청서」 1통과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으로부터 2개월 간 제세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방식임
- **(제출기관)** 화물 도착 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일본 납부기한 연장제도 관련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302_jr.htm

⑦ 특례 수입자 제도(AEO 제도)

- **(의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가 화물이 놓여있는 장소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보세 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특례 수입자)** 특례 수입자 제도 특정 수출자란 화물 보안관리 및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를 뜻함
 - 특례 수입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관세법 제7조의 2, 제7조의 5에 의거, 최근 3년간 세법 및 기타 국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 특례 수입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야 함
- **(장점)** 납세 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고 동시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신청방법)** 세관양식 C-9000호 「특례 수입자 등 승인·인정 신청서」에 요구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서는 어느 세관에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로 수입을 진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의 특례 수입자제도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특례수입자는 전국의 세관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일본 특례 수입자 · 특정 수출자 제도(AEO 제도)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안내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하코다테 세관	(+81) 0138-40-4254	고베 세관	(+81) 078-333-3071
도쿄 세관	(+81) 03-3599-6343	모지 세관	(+81) 050-3530-8312
요코하마 세관	(+81) 045-212-6125	나가사키 세관	(+81) 095-828-8801
나고야 세관	(+81) 052-654-4169	오키나와 세관	(+81) 098-862-9291
오사카 세관	(+81) 06-6576-3391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⑧ 특정 수출자 제도(AEO 제도)

- **(의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자가 화물이 놓여있는 장소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보세 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특정 수출자)** 특정 수출자 제도에서 특정 수출자란 화물 보안관리 및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를 뜻함
 - 특정 수출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관세법 제67조의 2, 제67조의 6에 의거, 최근 3년간 세법 및 기타 국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 특정 수출자의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야 함
- **(장점)**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자사의 창고 등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 선적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이로 화물의 리드타임 및 물류비용의 감소, 업무 효율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세관양식 C-9000호 「특례 수입자 등 승인 · 인정 신청서」에 요구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서는 어느 세관에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로 수출을 진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의 특정 수출자제도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특정수출자는 전국의 세관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IV

일본 통상환경

제1절 일본의 통상 정책 동향

제2절 한-일 관계 및 외교 현황

제3절 일본 수출규제

제4절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1

일본의 통상 정책 동향

» 일본 스가 신임내각 출범¹⁸⁾

- 일본은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 최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집권 8년 만에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스가 신임내각 新정부가 출범함
 - 아베 前총리 사임 발표 이후인 지난 9월 16일, 일본 의회에서 이루어진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 총재가 후임 총리로 지명됨
 - 스가 요시히데는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수행해온 인물로 최근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9.14)에서 70%의 득표율로 총재로 선출된데 이어, 의회 총리 지명을 통해 정식 총리로 지명됨
 - 스가 신임 내각은 아직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이어가고 IT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지금까지 스가 신임내각에서 언급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 정부조직 개혁 △ 고용 확보 △ 지방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 △ 외교/위기관리 등이 있음

일본 스가 신임내각 주요 정책 방향 및 내용

구분	내용
1	코로나19 대응 감염대책과 경제활동 양립 모색, PCR 검사체제 확충,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민 백신 확보 목표
2	정부조직 개혁 정부부처간 장벽 타파 및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마이넘버(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보급 확대
3	고용 확보 230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수행 지속, 관광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의 지원(Go to 캠페인 등)
4	지방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농업 개혁·관광 등 지방경제 활성화
5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 난임치료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등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확충, 사회 보장제도 효율화
6	외교/위기관리 인도태평양 전략 지속 추진,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 등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9.16)

- (외교분야) 스가 신임 총리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중국, 한국 등 인접국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교류하며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하고 싶다”고 외교 방향을 밝힌 바 있음

* 일본기자클럽 주최 정책토론회(2020. 9. 12)

- 그러나 일본 내부 평가 의견에 따르면, 스가 신임 총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정부조직 개혁 등의 분야에는 강점을 가지나, 외교 분야에서는 경험이 다소 부족하여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신임 내각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약 1년 정도에 불과하며, 스가 신임 내각이 기본적으로 기존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일본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한 국가의 정계 변화는 향후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본에 진출 또는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일본의 향후 정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일본 스가 총리 선출 및 신임내각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

- 지난 9월 16일, 우리 외교부에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스가 일본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출범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힘
 1. 우리 정부는 9.16.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新내각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는 바이다.
 2.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여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료 : 외교부 대변인 논평(2020. 9. 16.)



▶▶ ▶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전개¹⁹⁾

■ 최근 아프리카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1993년부터 시작된 TICAD를 활용, 아프리카와 다층적인 경제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그간 아프리카 지역은 빈민국 인식이 강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최근 주요 新시장으로 급부상함

- 국제통화기구(IMF)는 최근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아프리카 지역의 GDP 성장률은 세계 평균(-4.9%)을 상회하는 -3.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주요 지역별 실질 GDP 성장률 현황 및 전망치(2019-2021f)

20. 6월 기준(IMF)

구분	2019	2020(f)	2021(f)
세계 평균	2.9%	-4.9%	5.4%
아프리카(SSA)	3.1%	-3.2%	3.4%
선진국	1.7%	-8.0%	4.8%
신흥국	3.7%	-3.0%	5.9%

주 : 동 자료에서 편의상 '아프리카'로 기입한 내용은 실제 원자료에서 SSA(sub-Saharan Africa) 값에 해당함. SSA는 전체 아프리카 54개국 중 중동 지역(아랍권 북아프리카)을 제외한 49개국을 포함하는 범위를 뜻함/는 전망치.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IMF(2020),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KOTRA(2020)



■ 일본의 對아프리카 협력은 1993년 시작된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 도쿄·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활용하여 다층적인 경제파트너로 성장하는데 적극 활용 중임

- 당초 일본은 TICAD에서 아프리카의 경제개발 보다는 교육·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와 거버넌스 개혁을 중시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나, 2008년(TICAD 4)부터는 아프리카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경제개발을 중심 전략으로 태도 변화를 취함

TICAD(도쿄·아프리카 개발회의) 연혁 및 주요 협력 내용

구분	주요 협력 내용 및 성과
1993년 TICAD 1 (도쿄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對아프리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조가 아프리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 아프리카의 자조노력과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
1998년 TICAD 2 (도쿄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사회개발·경제개발·개발기본) 분야별 목표·정책 채택 • 아프리카의 자조노력과 국제사회 개발파트너 중요성을 강조
2003년 TICAD 3 (10주년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개발 3대 원칙 ‘평화정착·인간중심 개발·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사감’을 제시
2008년 TICAD 4 (요코하마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아프리카’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 가속화 추진 • 안전보장 확립 및 환경·기후변동에 관한 대응을 중점화
2013년 TICAD 5 (요코하마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AfDB 3억 달러의 엔 차관을 제시 • 아프리카 여성과 젊은 층의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 강조
2016년 TICAD 6 (나이로비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 명 인재육성 및 관민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촉진 • 보건시스템 구축, 평화·안정과 관련된 아프리카 과제대응 강화
2019년 TICAD 7 (요코하마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6년간 산업인재 3,000만 명 육성, 민간주도 협력을 강화,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중시 • 경제, 사회,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 협력분야 설정

자료 : 일본 외무성,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KOTRA(2020)

- 일본의 對아프리카 지원전략이 경제개발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한데에는 일본 정부의 아프리카 성장 가능성 인식 및 중·아프리카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견제 영향 등이 있음
 - 일본은 TICAD 4번째 회의 목표로 ‘활기찬 아프리카를 지향하며 희망과 기회의 대륙’을 제시했으며, 목적으로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산업개발을 지원하고 일차산품 위주의 수출의 존도를 줄여나가 아프리카 역내 부가가치 증대’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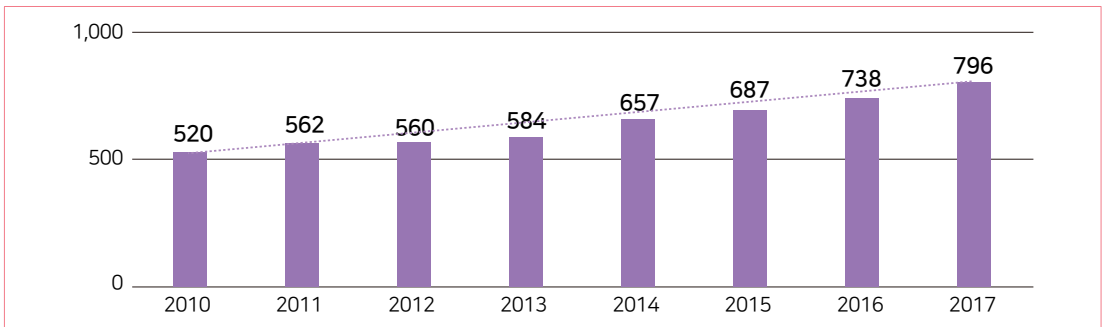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인재육성, 인프라, 농업·농촌 개발, 무역·투자·관광 진흥 등을 제시

■ 2018년 기준, 일본의 對아프리카 투자규모(Stock 기준)는 전년대비 9% 증가한 9,673억 엔(약 90억 달러)을 기록함

- 일본의 투자규모는 중국(430억 달러)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과 진출기업 수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거점 수는 2010년 520개에서 2017년 795개로 크게 증가
 - 일본기업들이 아프리카 지역 내 다른 국가로 현지법인을 추가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진출 거점 수가 크게 증가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 거점 수

[단위 : 거점]



주 : 거점 수는 동일 기업이 복수 국가에 진출한 경우에 복수로 집계됨

자료 : 일본 외무성(2018);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KOTRA(2020)

- 일본기업의 최대 아프리카 진출 국가는 남아공, 케냐,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순으로 나 타남
 - JETRO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진출 기업의 50% 이상이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진출 최대 이유로서 '잠재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제 일본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을 확대하는 단계에 진입
 - 전통적으로는 일본의 글로벌 상사 및 건설사가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인프라 및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재생가능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 중임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 현황

국가	주요 진출 기업 및 해당 산업
이집트	닛산(日産)자동차 : 자동차 생산
튀니지	야자키(矢崎)총업 : Wire Harness 생산
모잠비크	미츠이(三井)물산 : LNG 개발
코트디부아르	미츠비시(三菱)상사 : 축전지 사업
알제리	닛키(日揮) : 플랜트 개발
나이지리아	아지노모토(味の素) : 조미료 판매
모로코	마루젠 제차(製茶) : 녹차생산(시즈오카시) 닛신(日清) 식품 : 즉석면 판매
짐바브웨	칸사이(関西) 페인트: 페인트 생산
케냐	도요타 자동차: 자동산 생산 이스즈 자동차: 상용차 판매
남아프리카공화국	덴소 : 자동차 보수 부품 판매 도쿄해상홀딩스 : 보험회사에 출자

자료 : 日本經濟新聞(2019.8.28.), 「FTAビジネス革新」,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KOTRA(2020)

■ 이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 아프리카의 고위급 인사와의 지속적인 방문 확대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우리 정부는 부처별 장관급 협의체*를 통합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기재부 주관),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아프리카 포럼(외교부 주관) 등

* - 우리기업의 우선 진출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간 무역

- 그러나 이에 추가적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 공동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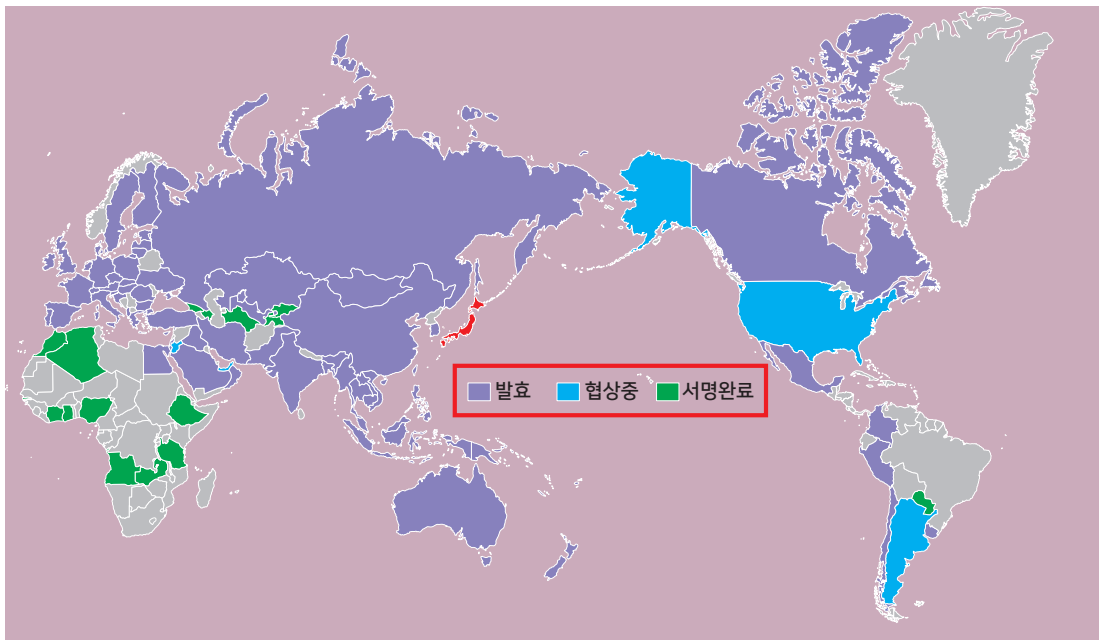
»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협정 체결²⁰⁾

- 2020년 3월 기준,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체결한 투자 관련 협정*은 총 44개로 확인됨

* FTA/EPA 투자 관련 챕터를 포함

- 발효 : 44개 (투자협정 30개, EPA 14개)
- 협상 중 : 23개 (투자협정 19개, EPA 4개)
- 서명 : 5개 (투자협정 3개, EPA 2개)
 - 협상 중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협정이 발효될 경우 일본은 94개의 국가 및 지역을 커버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게 됨

일본의 투자 협정 체결 현황



자료 : 일본 외무성 「외교백서 2020」

일본의 발효·서명·협상 중 투자 협정 목록

발효된 투자 협정(종료된 협정은 제외)			
1	이집트(1978)	16	쿠웨이트(2014)
2	스리랑카(1982)	17	이라크(2014)
3	중국(1989)	18	한중일(2014)
4	터키(1993)	19	미얀마(2014)
5	홍콩(1997)	20	모잠비크(2014)
6	파키스탄(2002)	21	콜롬비아(2015)
7	방글라데시(1999)	22	카자흐스탄(2015)
8	러시아(2000)	23	우크라이나(2015)
9	한국(2003)	24	사우디아라비아(2017)
10	베트남(2004)	25	우루과이(2017)
11	캄보디아(2008)	26	이란(2017)
12	라오스(2008)	27	오만(2017)
13	우즈베키스탄(2009)	28	케냐(2017)
14	페루(2009)	29	이스라엘(2017)
15	파푸아뉴기니(2014)	30	아르메니아(2019)

협상 중인 투자 협정			
1	앙골라	11	세네갈
2	알제리	12	키르기스스탄
3	카타르	13	나이지리아
4	가나	14	잠비아
5	모로코	15	에티오피아
6	탄자니아	16	타지키스탄
7	디부아르	17	EU*
8	바레인	18	파라과이
9	투르크	19	아제르바이잔
10	조지아		

* 투자 보호 징계, 투자 분쟁 해결에 대한 협상

협상 중인 투자 챗터 포함 EPA			
1	캐나다	3	RCEP
2	한중일	4	토크

발효된 투자 챗터 포함 EPA			
1	싱가포르(2002)	8	필리핀(2008)
2	멕시코(2005)	9	스위스(2009)
3	말레이시아(2006)	10	인도(2011)
4	칠레(2007)	11	호주(2015)
5	타이(2007)	12	몽골(2016)
6	브루나이(2008)	13	CPTPP(2018)
7	인도네시아(2008)	14	EU(2019)

서명된 투자 협정	
1	TPP(2016년 2월 서명) (EPA)
2	아르헨티나(2018년 12월 서명, 승인)
3	아랍에미리트(2018년 4월 서명)
4	요르단(2018년 11월 서명)
5	일-ASEAN CEPA(2019년 2월 서명)

자료 : 일본 외무성 「외교백서 2020」

2

한-일 관계 및 외교 현황

» 한-일 투자 동향²¹⁾

- 2019년 기준, 일본의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14.3억불, 한국의 대일 투자는 전년대비 약 8% 감소한 13.8억불을 기록함
 - 2019년 한국의 전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는 233.3억불로 전체 금액 대비 일본의 투자 금액은 약 6% 정도에 해당함

한-일 투자동향(2015~2020.3)

[단위 : 억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
일본의 대한투자	16.6 (314건)	12.5 (299건)	18.4 (328건)	13.0 (335건)	14.3 (238건)	1.3 (51건)
한국의 대일투자	8.8 (673건)	6.5 (715건)	8.1 (868건)	15.0 (888건)	13.8 (872건)	-

주 : 각 값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함(일본의 대한투자는2020년 1분기까지, 한국의 대일투자는2019년까지의 신고기준 통계)

자료 : 한일 주요 통계(2020.6 기준), 한일경제협회

» 한-일 교역 동향²²⁾

- 2019년 기준, 한-일 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11% 감소한 760억불을 기록
 - 2011~2012년 한-일 간 무역규모는 1,000불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2013년 이후 엔저 및 한일 관계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약 851억불 → (2019년) 약 760억불 → (2020년) 약 294억불
 - 그러나 여전히 양국은 서로의 주요 교역국에 해당함
 - (한국) 2020. 5월 기준, 일본은 한국의 5위 수출국이자 3위의 수입국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교역규모가 큰 국가임
 - (일본) 2020. 4월 기준,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4위의 수입국으로 역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교역규모가 큰 국가임

한-일 교역동향(2018~2020.5)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對日 교역	
	전체	對日	비중	전체	對日	비중	합계	무역수지
2018	604,860 (5.4)	30,529 (13.8)	5.0	535,202 (11.9)	54,604 (-0.9)	10.2	85,133	-24,075
2019	542,233 (-10.4)	28,420 (-6.9)	5.3	503,343 (-6.0)	47,581 (-12.9)	9.5	76,001	-19,161
2020. 5	201,508 (-11.3)	10,974 (-8.4)	5.4	194,430 (-8.5)	18,421 (-10.2)	9.5	29,395	-7,447

주 : 각 값은 KOTIS 자료를 기준으로 함. 괄호() 안의 값은 증감률(%)

자료 : 한일 주요 통계(2020.6 기준), 한일경제협회 자료 참고

한-일 인적교류 현황²³⁾

- 2019년 기준, 한-일을 방문한 양국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886만 명으로 나타났으나 각국 외국인 입국자 중 양국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1,750만 명) 중 일본인의 비중은 20.5%로 1위인 중국(34.4%) 다음으로 많음
 - (일본)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3,188만 명) 중 한국인의 비중은 12.2%로 역시 1위인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

한-일 인적교류 현황(2014~2020.4)

[단위 : 만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4
방한 인구	1,420	1,323	1,724	1,334	1,535	1,750	207
방한 일본인	228 (-17.0)	184 (-19.4)	230 (25.0)	231 (0.6)	295 (27.6)	327 (10.9)	42 (-60.9)
일본인 비중	16.1	13.9	13.3	17.3	19.2	20.5	20.5
방일 인구	1,341	1,974	2,404	2,869	3,119	3,188	394
방일 한국인	276 (12.2)	400 (45.3)	509 (27.2)	714 (40.3)	754 (5.6)	559 (-25.9)	48 (-82.0)
한국인 비중	20.5	20.3	21.2	24.9	24.2	12.2	12.8
한일 합계	504	584	739	945	1,049	886	90

주 : 각 값은 한국관광공사, JNTO 자료를 기준으로 함. 괄호() 안의 값은 증감률(%)

자료 : 한일 주요 통계(2020.6 기준), 한일경제협회

3 일본 수출 규제

» 일본의 수출규제²⁵⁾

- 우리나라 및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전략 물자* 등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략물자 :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 수출통제 대상 품목

-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하여,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운영 중임
- 또한 이에 추가적으로 비(非)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 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캐치올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 수출통제 대상 품목

구분		품목수	세부설명
전략 물자	민감품목	26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품목 •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품목	85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 (예)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5~40류, 제54~59류, 제63류, 제68~93류, 제95류 •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무기 34개, WMD 4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전략물자 통제사양에 미달하는)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

☑ 일본 수출 통제 대상 품목 확인 방법

-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japan.kosti.or.kr)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02-6000-6400)를 통해 확인 가능

■ 수출통제 지역

- 일본 내각은 2019년 8월, 수출통제제도가 적용되는 지역 구분의 명칭을 기존 화이트국/비화이트국에서 그룹 A~D로 변경함
 - 화이트 국가(그룹 A)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가장 기준을 적용함
 - 최근 일본 내각의 수출통제 지역 구분 변경으로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화이트 국가에 소속되었으나, 각의 결정 이후에는 화이트 국가(그룹 A)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 수출통제 지역 변화 비교

분류	각의 결정 이전		각의 결정 이후	
지역 구분	화이트국	한국 포함 27개국	그룹 A	기존 화이트국가(8.28부터 한국배제, 26개국)
			그룹 B	4대체제(WA MTCR, NSG, AG)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8.28부로 한국포함)
	비화이트국	화이트국 이외 잔여국	그룹 C	그룹 A, B, D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국
			그룹 D	수출령 별표 3의2(UN무기금수국), 별표 4(이란, 이라크, 북한)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

■ 수출통제 허가 방식

- 품목별 민감도 및 수출지역을 고려, 개별허가 · 포괄허가 · 캐치올 허가 등으로 차등 적용
 - 포괄허가는 개별허가 대비 간소화된 심사 적용, 기업들에게 유리
 - 캐치올 허가는 개별허가와 유사, 다만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일본에서는 캐치올 허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개별허가로 통칭)

일본 수출통제 허가 방식

분류	대상 국가	허가 방식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263개)	모든 국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857개)	화이트 국가	일반포괄허가
		일반 국가(B그룹 기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분류	대상 국가	허가 방식
비전략물자(중점감시대상 품목, 우려거래자 거래 품목 등)	화이트 국가	허가 불필요
	일반 국가	캐치올 허가(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

■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

①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

- 3개 품목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 (진행상황) 2019년 7월 4일부터 기시행 중(기존 포괄허가 효력 정지, 특별일반포괄허가도 금지)

②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 (진행상황)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존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여 허가 방식으로 (1)을 적용받아왔으나, 이제는 (2)가 적용되는 상황

일본 수출통제 허가 방식

구분		(1)	(2)
		화이트국	비화이트국(일반 국가)
전략물자	민감품목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 ICP기업만 가능
비전략물자		허가 불필요	캐치올 허가* * 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

☑ 일본 수출 통제대상 품목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은?

- (수출자 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하여 직접 확인
- (ECCN 확인)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ECCN(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5자리의 분류번호)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상호 비교
- (판정 활용)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한 후 상기의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 <참고> 일본의 비화이트국 대상 대량살상무기 감시대상품목(WMD) 리스트(40개)

통제 대상 품목	WMD 통제 현황				통제 대상 품목	WMD 통제 현황			
	핵무기	미사일	생물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미사일	생물 무기	화학 무기
(1) 트리부틸 포스페이트(TBP)	●	-	-	-	(21) TIG 용접유닛, 전자빔 용접유닛	●	●	-	-
(2)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	●	●	-	-	(22) 방사능 선량계 및 감지 장비	●	-	-	-
(3) 티타늄합금	●	●	-	-	(23) 미세분말 제조용 분쇄기	-	●	-	-
(4) 마레이징강	●	●	-	-	(24) 칼피셔 수분 장비	-	●	-	-
(5) 지름75mm 이상의 알루미늄관	●	-	-	-	(25) 프리프레그 생산 전용 장비	-	●	-	-
(6) 유동성형기	●	●	-	-	(26) 인공흑연	●	●	-	-
(7) 수치제어기계	●	●	-	-	(27) 자이로스코프	-	●	-	-
(8) 정수압프레스	●	●	-	-	(28) 로터리 인코더	-	●	-	-
(9) 필라멘트 와인딩 장치	●	●	-	-	(29) 대형트럭	-	●	-	-
(10) 주파수 변환기	●	-	-	-	(30) 크레인	-	●	-	-
(11) 질량분석계 및 이온원	●	-	-	-	(31) 밀폐식 발효조	-	-	●	-
(12) 진동 시험 시스템	●	●	-	-	(32) 원심분리기	-	-	●	-
(13) 원심 밸런싱 런닝 머신	●	●	-	-	(33) 동결건조기	-	-	●	-
(14) 압력 변환기	●	●	-	-	(34) 내식성 반응기	-	●	-	●
(15) 비파괴 검사장비	●	●	-	-	(35) 내식성 교반기	-	●	-	●
(16) 오실로스코프 또는 파형 디지파이어 및 기록기	●	-	-	-	(36) 내식성 열교환기 또는 응축기	-	●	-	●
(17) 고전압 직류 전력공급기	●	-	-	-	(37) 내식성 증류탑 또는 흡수탑	-	-	-	●
(18) 대형 발전기	●	-	-	-	(38) 내식성 충전용 기계	-	-	-	●
(19) 대형 진공펌프	●	-	-	-	(39) 분무기를 탑재한 UAV	●	●	●	●
(20) 방사능을 견디는 로봇	●	-	-	-	(40) UAV 탑재에 전용 설계된 분무기	●	●	●	●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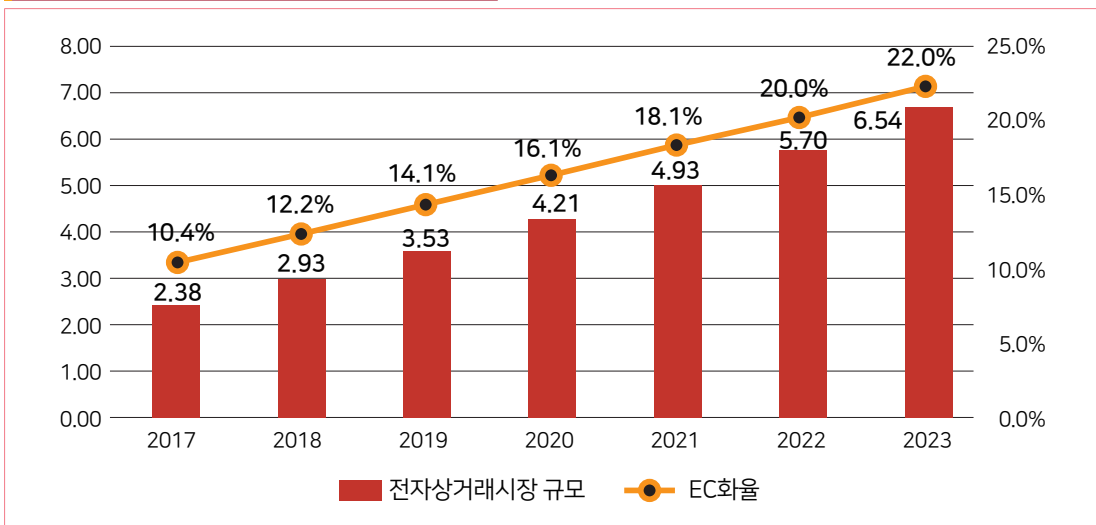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²⁶⁾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 최근 세계적으로 빠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 19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우 활발해짐

○ 2019년 기준, 세계 B2C(Business-to-Customer)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약 3조 5,300불을 기록함

세계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주 : 여행, 이벤트티켓, 요금납부, 세금, 송금, 푸드서비스, 도박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경제산업성(eMarketer, May 2019), KOTRA 해외시장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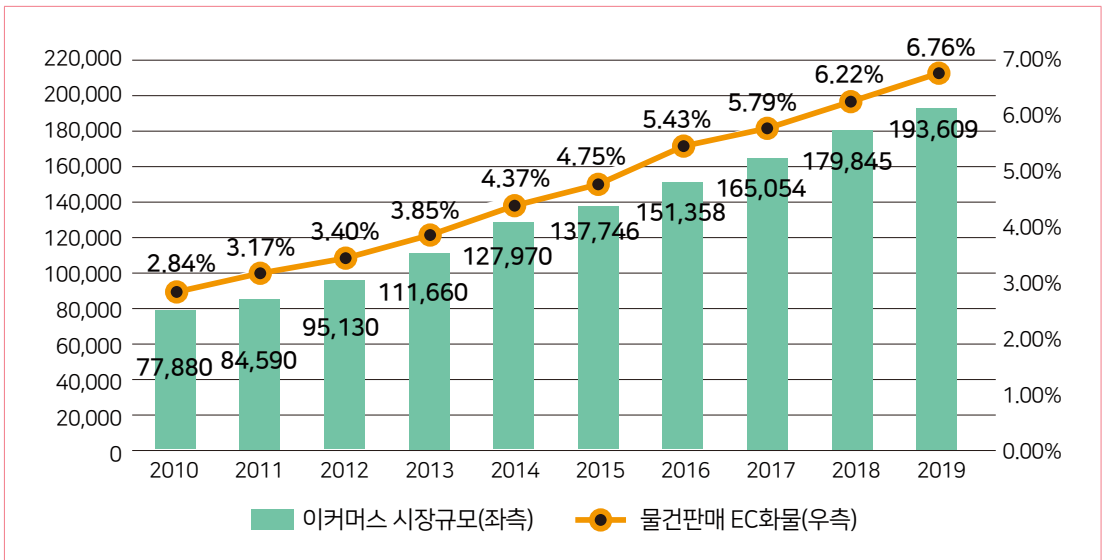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뢰에 기반하여 물건을 거래하여, 일본 소비자들은 주로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약 8% 성장했고, 매년 비슷한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물건 판매 시장 규모 역시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10조 515억 엔으로 10조 엔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점차 커지고 있음
- 다만 전체 B2C 물건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의 비율은 7.65%로 세계시장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일본 물건 판매 시장 규모 및 온라인 거래 비중 추이



주 : 물건 판매는 서비스, 디지털 분야를 제외한 재화를 의미함

자료 : 경제산업성 온라인유통망 보고서, KOTRA 해외시장뉴스

■ 이처럼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까닭으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음

① 스마트폰의 이용확대에 따른 언택트 소비 활성화

-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선호하는 일본이지만, 최근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급증함
- 온라인 쇼핑을 통한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자 확대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주요하게 작용함
 -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전용 앱을 이용하여 즉시 온라인 구매처로 접속이 가능하고, 푸시업 알림 기능을 통해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실제로 2019년 일본 온라인 B2C 매출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②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확대

- 스마트폰 보급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촉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요인은 SNS임
- SNS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엔진으로써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
- 최근 소비자는 관심 상품을 종래의 검색 사이트뿐 아니라 SNS로 찾아보고, SNS상에서 접점을 가진 인물이나 취미·기호·생각 등이 일치하는 인물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내림
- 이런 배경에서 SNS를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전략은 점점 확산되고 있음
 -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 인플루언서를 통한 상품 어필, 소비자의 흥미·관심에 기반한 정보를 발신, 시장동향이나 상품에 대한 평가 등의 수집·분석 등
- 최근 글로벌 플랫폼인 Facebook, Instagram의 광고 수입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모두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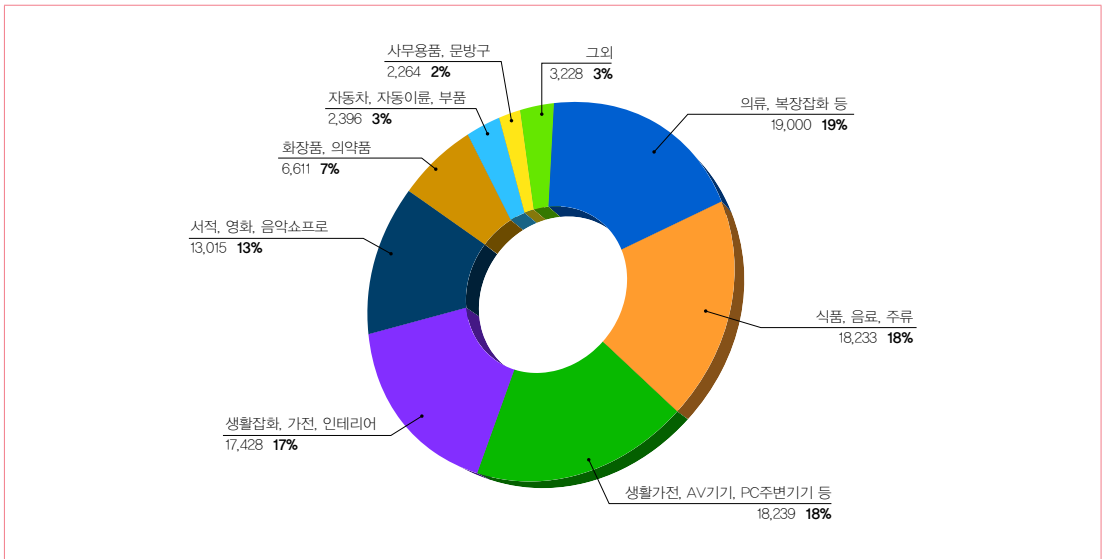
③ 캐쉬리스 결제의 보급

-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개정하면서 캐쉬리스 결제 수단의 사용 확대를 추진함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 등의 캐쉬리스 결제의 보급은 전자상거래 결제 시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문턱을 낮아지게 하고, 결제 수단에 대한 우려로 전자상거래 참여를 꺼려했던 소비자층의 이용을 촉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유망품목

- 일본 B2C 전자상거래의 품목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의류 상품이 1조 9100억 엔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식품, 음료, 주류(1조 8233억 엔)와 생활가전, AV기기, PC주변기기(1조 8239억 엔) 부문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B2C 전자상거래 시장 판매 품목별 비중



자료 : 경제산업성, KOTRA 해외시장뉴스

■ 다만 B2C 전자상거래 시장 내 판매 중인 물품의 비중과 달리, 전자상거래 이용이 가장 활발한 품목은 사무용품 및 문방구 부문으로 나타남

- 온라인 거래 비중은 사무용품 및 문방구(41.75%), 서적, 영상, 음악소프트(34.18%), 그리고 생활가전, AV기기, PC주변기기 분야(32.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 주요 기업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매출 상위 10위권을 기록한 기업 중 종합 쇼핑업체인 아마존 재팬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전자기전제품 소매업체인 요도바시 카메라가 2위를 차지했으나 매출에 있어 1위인 아마존 재팬과 매우 큰 격차를 보임
- 이외 일본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 매출 상위 10위에 포함된 업체들은 종합몰을 제외하면 패션, 가전, 식품과 관련된 곳이며, 2019년에는 ZOZO, 유니클로와 같은 패션 관련 업체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2019년 일본 전자상거래 매출 상위 10개사

[단위 : 백만엔, %]

순위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비고
1	아마존 재팬	1,528,100 (14.3)	종합
2	요도바시 카메라	121,277 (9.3)	가전
3	ZOZO	118,405 (20.3)	패션, 야후쇼핑에 의해 매수
4	빅카메라	86,000 (17.8)	가전
5	유니클로	63,063 (29.4)	패션
6	이온	62,000 (-)	식품
7	조선전기	58,000 (-)	가전
8	Dinos Cecile	57,074 (▲44)	종합
9	JAPAN NET TAKATA	57,000 (5.9)	가전, 홈쇼핑
10	센슈카이	55,000 (-)	종합, 카탈로그형 판매업

자료 : 통신판매신문사, KOTRA 해외시장뉴스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V

우리 기업의 對일 수출·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제1절 對일 수출·FTA 활용 주요
애로 사례 및 대응방안

1

對일 수출 · FTA 활용 주요 애로 사례 및 대응방안

» 일본 품목분류 관련 정보 확인

(1) 애로사항

- K기업은 일본으로 수출하기 전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에서의 HS code와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음

(2) 관련규정

-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는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제도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분류예규 등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임
-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화 및 세관창구 문의(구두문의)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일본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

- C-1000에는 품명, 수량, 금액, 수입계약시기, 수입예정시기, 견본 · 사진 · 카탈로그 · 설명서, 제품설명(제품 성분 비율, 색상, 구조, 기능, 용도)등을 기재함
⇒ https://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1000.pdf

사전교시(事前教示) 조회 관련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하코다테 세관	(+81)0138-40-4716	도쿄 세관	(+81)03-3529-0700
요코하마 세관	(+81)045-212-6156	나고야 세관	(+81)052-654-4139
오사카 세관	(+81)06-6576-3371	고베 세관	(+81)078-333-3118
모지 세관	(+81)050-3530-8373	나가사키 세관	(+81)095-828-8669
오키나와 세관	(+81)098-862-8692		

자료 :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일본 품목분류 사전교시제도 관련 서류(C-1000) 앞면 번역본

전면



접수번호 (세관 기입란)	등록번호 (세관 기입란)	
------------------	------------------	--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 세관 양식 C wp 1000호

신청일 및 연월일	조회인 주소, 성명, 표시 대리인 주소, 성명, 표시	수입업자 기호	
다음의 <input type="checkbox"/> 관세율표 적용에 따른 HS 분류 <input type="checkbox"/> 관세율 <input type="checkbox"/> HS 코드 화물 <input type="checkbox"/> 내국 소비세 등의 적용구분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기타법령 관련내용을 조회합니다		제조장소 생산지	
품명, 브랜드 및 모델 번호	단가	수입신청 예정인 관청	
조회 화물 <input type="checkbox"/> 도착 <input type="checkbox"/> 미도착	참고자료 (반환의 필요/불필요)	견본·사진·도화·카탈로그·설명서·분석 성적·기타()	
수입 계약시기 수입의 예정시기, 수량 및 금액 및 특별 주문 투자 또는 장기 계약의 예정의 유무		조회화물에 관한 사전 교시 실적(유·무) (사전 교시 번호) 유사한 화물에 따른 수입 실적(유·무) (수입 신고 번호)	
조회화물 설명 (제법, 성분 비율, 색상, 구조, 기능, 용도, 포장 등)			
관세율 적용에 대한 의견, 등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비공개 기간의 필요 여부 원칙을 공개합니다. 뒷면 주의 사항 3 참조			
	예/아니오	비공개 이유	
비공개 기간 () 일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계속	보충설명서	청구·제출 장

(주) 뒷면의 확인서에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규격 A4)

후면



○ 사전 교시 조회에 관한 확인서

항목	확인란
1. 조회에 따른 화물	
① 구체적인 화물에 관한 조회이며 가상의 화물에 관한 조회는 없습니다.	예 · 아니오
② 조회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조회하는 화물에 대해 불복 또는 소송 등 관세율표 적용에 등에 관한 분쟁은 없습니다.	예 · 아니오
③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관해 조회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2. 조회에 대한 사항	
④ 이 조회와 관련하여,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 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법, 성상 등을 파악하고 그 다른 이해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 때문입니다.	가, 나, 다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입하십시오.
3. 보충 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에 대해	
⑤ 조회 제출 세관에서 보충 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 때문에 한 경우에는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에 응합니다.	예 · 아니오

조회자 또는 그 대리인	성명	인(印)
	주소 또는 위치	

주 의 사 항

- 이 조회서 1부를 제출하십시오. 「조회화물의 설명」란 또는 「관세율표 적용에 소속 구분」 등에 관한 의견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계속) (양식 A4)판에 기재한 후 첨부하십시오.
- 이 조회서를 기재한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사실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가상 상품에 관한 조회 기타 사전 교시의 취지에 반하는 조회의 경우에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사전 교시 조회에 대한 답변으로 세관에서 교부 또는 송달되는 사전 교시 회답서(변경 통지서 겸용)의 세번의 참고로 하기 위해 조회화물의 내용과 답변 내용 답변 후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수입자 등 일반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등의 답변 후 일정 기간(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합니다.)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교시 조회서중인 '비공개 기간'의 사이의 필요 여부란 중 '예'를 클릭하고 '비공개 이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비공개 기간'란에 구체적인 비공개 기간(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지정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비공개기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불가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기밀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을 비공개로 게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비공개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 A4)

주 : 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실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에서 원본 서류를 일본어 원문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일본 품목분류 조회 가능 국내 사이트

-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 외국사례를 통해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사례를 확인가능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검색결과: 0 / 0

세관 상품검색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판례 등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관의기능 세조식 정보공개 관세업무포

세계HS 품목분류사례-일본(가로)(UI-ULS-0203-020S) Home > 세계HS > 품목분류 외국사례 > 일본

전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칠레 호주

결정세번: 190230
+검색어

초기화 조회

키로보기 새로보기 팝업보기

전체 56 건 페이지당 10 원문 영문 국문

시행일자	참조번호	결정세번	여미지간수	품명
2016-02-...	116000614	190230.200	0	Prepared foods assorted (② macaroni salad)
2016-02-...	116000612	190230.200	0	Side dish set (② macaroni salad)
2015-09-...	115004391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9-...	115004388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9-...	115004390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9-...	115004387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9-...	115004389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8-...	115003795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8-...	115003796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2015-08-...	115003798	190230.200	0	Instant cup noodles

1 2 3 4 5 6

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

» 일본 관세율 정보 확인

(1) 애로사항

-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J사는 000품목의 관세율정보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며, 어디서 해당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음

(2) 관련규정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관세율 확인 가능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최신 관세율 확인 링크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0_10/index.htm

○ 일본 관세율표(예시)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HS code		품명	관세율	관세율(EPA)
			일반	싱가포르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Free	Free
8701.20	00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Free	Free
8701.30	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Free	Free
		기타		
8701.91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Free	
	010	- 농업용		Free
	090	- 기타		Free
8701.92		18킬로와트를 초과하며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Free	
	010	- 농업용		Free
	090	- 기타		Free
8701.93		18킬로와트를 초과하며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Free	
		- 농업용		
	011	-- 52킬로와트 이하인 것		Free
	012	-- 5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Free
	090	- 기타		Free

자료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0_10/data/e_87.htm (2020.10.1.)



☑ <참고> 일본 관련 주요 사이트

▶ 유관기관

조직명	홈페이지
외무성	http://www.mofa.go.jp/
경제 산업 무역부	https://www.meti.go.jp/policy/trade_policy/epa/english.html
관세청	https://www.customs.go.jp/
동경입관	http://www.immi-moj.go.jp/soshiki/
국가공안위원회	www.npsc.go.jp
경찰청	www.npa.go.jp
경시청	www.keishicho.metro.tokyo.jp
외국인 생활가이드 (긴급 재해 시 대처요령)	http://www.tokyo-icc.jp/guide_kor

▶ 일본 경제관련 정부기관 사이트

조직명	홈페이지
재무성	http://www.mof.go.jp/
국세청	https://www.nta.go.jp/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jftc.go.jp/
금융청	http://www.fsa.go.jp/
소비자청	https://www.caa.go.jp/
총무성	http://www.soumu.go.jp/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mhlw.go.jp/churoi/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임야청	http://www.rinya.maff.go.jp/
수산청	http://www.jfa.maff.go.jp/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자원에너지청	http://www.enecho.meti.go.jp/
원자력규제위원회	http://www.nsr.go.jp/
특허청	https://www.jpo.go.jp/indexj.htm
중소기업청	http://www.chusho.meti.go.jp/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
관광청	http://www.mlit.go.jp/kankocho/
기상청	http://www.jma.go.jp/jma/index.html
운수안전위원회	http://www.mlit.go.jp/jtsb/
환경성	http://www.env.go.jp/

자료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일본 수입금지 품목 정보

(1) 애로사항

- 아세안쪽에서만 수출하던 W사는 RCEP에 대비해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우던 중 일본에 수입금지된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난관에 봉착하였음

(2) 관련규정

- 일본에서는 관세법 69조 제11항에서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함
- 또한 관세법 이외 식물방역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워싱턴 조약,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서도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정해져 있음

☑ 일본 수입금지품목

-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 ② 지정 약물 (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③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 ④ 폭발물
- ⑤ 화약류
- ⑥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 ⑦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 법률 제6조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 ⑧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⑨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 ⑩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⑪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등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일본편
Japan





부 록 전문가 기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통관환경 안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신재형 관세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통관환경 안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신재형 관세관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15일, 한국은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였다. RCEP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역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체결된 최대 규모의 FTA로서 무역시장의 다변화,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 축소 등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특히 그 동안 FTA를 체결한 적이 없는 일본과의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EP이 발효되더라도 일본의 통관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흔히들 보이지 않는 통관장벽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세관의 자의적인 법규정 해석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일본과의 교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통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 및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일본 세관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일본과의 교역 시 유의할 사항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수입물품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의 정확도, 각종 제세의 납부 여부,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세관 통관단계의 지연은 타법령의 허가·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각종 규제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것은 수입자가 사전에 판매허가, 제조판매업자 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주요사항 발췌)

법령명	주요 품목	주관부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할당품목(청어 등) 수입제한품목(고래 등) 사전확인품목(백신 등)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조수보호,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조류 및 그 가공품, 짐승 및 그 가공품, 조류의 알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수보호관리실
독극물단속법	독극물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
의약품, 의약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지정약물, 동물용의약품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수산자원보호법	잉어, 금붕어 기타 붕어류, 장어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수산안전실
비료단속법	비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농약단속법	농약	
설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전분	농림수산성 정책총괄관 지역작물과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버터, 탈지분유, 연유 등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우유유제품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물, 식기, 포장용기, 장난감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기획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우제류, 말, 닭, 토끼, 소세지, 햄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노동안전위생법	유해물질(석면 등)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대책과

예컨대, 최근 일본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일본으로 수출되는 식품류에 대하여 수출국 명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은 2020년 6월부터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상기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축산품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동 제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3. 신속 통관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는 수출입업자들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세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https://www.customs.go.jp/tsukan/index.html> 5. 便利な制度 부분 참조)

①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제도란, 수입하려는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 또는 검사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비심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물품의 도착 전에 서류 심사를 행할 수 있고, 타 법령에 의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세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여부가 수입신고 이전에 판명되므로 화물 인수 일정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

일본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 소재지 관할 세관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는 AEO 사업자(수출입자, 통관업자)에 한하여 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의 관할세관 이외의 관서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출자가 AEO 사업자인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교시제도

사전교시제도는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과세가격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고, 수입통관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조회를 요청하고, 세관으로부터 문서 형태로 회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 회답서를 수입통관 시 제출하게 되면 법령 등에 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회답내용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세관은 조회신청이 있을 후 원칙적으로 30일(관세평가는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는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판매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는 제도(BP ; Before Permit)이다. 다만,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출입금지품, 타법령 허가·승인 등 필요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4. 코로나19에 따른 일본 세관의 대응

코로나19는 일본 세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본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에 부응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세관의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코로나19와 관련한 구호물자, 라이프라인(lifeline) 확보를 위한 물자(물, 연료 등)와 같이 긴급하게 통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통관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른 구호물자 등의 수입 시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간단한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증물품 등 면세증명서의 서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수출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아니더라도 편리한 세관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압인(押印) 취급 절차 간소화, 서류의 전자적 제출 허용 등 민원인의 편리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② 휴대품신고서 전자적 제출 방식 도입

최근 일본에서도 100여 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규제를 실시하다 보니, 일본의 공항에도

입국여객이 많이 감소하였다. 일본 세관은 입국 여객이 감소한 시점에서 종이 형태로 제출하던 휴대품 신고서를 시스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세관 직원과 여행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별도의 세관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QR코드화 하여 신고단말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일본의 6대 주요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이나 이사화물 등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세관직원이 있는 검사대로 안내된다.

③ 중장기 비전 「SMART 2020 세관구상」 발표

2020년 6월, 일본 세관은 중장기 비전인 “SMART 2020 세관구상”을 발표하였다. 동 비전은 새로운 기술의 세관 영역 접목을 통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기술적 고도화, 위험대응능력 향상, 인재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관 내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수출입업자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통관업무 개편,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화물 신고 및 체제 정비, 민원상담 자동응답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세관 이용자도, 세관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 맺음말

RCEP 체결로 인해 기존에 비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관세장벽은 한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RCEP 발효에 따른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특유한 상거래 문화 및 세관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두어야 RCEP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의 제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수출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식재료 등은 세관 측에서 생산공정, 원재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일본 대사관 또는 KOTRA, aT 등 다양한 기관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 문헌

- 1) 일본경제 주간동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2020.11.09~11.15)
- 2) 2020년 세계경제 전망(59p), KIEP(2020.05.12.)
-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11.13.)
- 4)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s://www.fta.go.kr/>);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19.11.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11.16.); “20억 시장 ‘메가 FTA’ RCEP 시대 열렸다”, 머니투데이(2020.11.16.)(<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518262257860>); [틴틴경제] 메가 FTA는 뭔가요, 중앙일보(2015.10.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518262257860>);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포스코경영연구소(2015.2.4.); THE WORLD BANK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_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 5)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www.mof.go.jp/>); 국가별 통관정보(일본),의료기기통합정보 BANK(2017);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6),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 6)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www.mof.go.jp/>); 국가별 통관정보(일본),의료기기통합정보 BANK(2017);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6),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 7) 新통관절차법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19);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s://www.e-gov.go.jp/>);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원종학·김진수(2008); 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청·김·장법률사무소(2012); KOTRA 국가별 통관정보-일본 (2017)
- 8)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일본); Tradenavi (<http://www.tradenavi.or.kr/>); 新통관 절차법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19);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https://www.e-gov.go.jp/>);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원종학·김진수(2008)

- 9)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일본);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10)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일본 관세제도, 과채류공동수출연구사업단 서울시립대학교 심이성
- 11) 일본 '동아시아 EPA(경제연계협정)' 정부내 갈등, 한겨레신문(2006.07.31); FTA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산통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 12)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산통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JETRO(<https://www.jetro.go.jp/>)
- 13)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JETRO(<https://www.jetro.go.jp/>)
- 14)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JETRO(<https://www.jetro.go.jp/>)
- 15)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 JETRO(<https://www.jetro.go.jp/>)
- 16) 일본 상공회의소'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서'(https://www.jcci.or.jp/gensanchi/epa_manual.html)
- 17)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 JETRO(<https://www.jetro.go.jp/>)
- 18)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9.16.)
- 19)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KOTRA(2020); 정재욱·이주영·정민지(2019), 「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결과와 시사점」
- 20) 일본 외무성 「외교백서 2020」
- 21) 2020년도 한일 간 주요통계(2020년 6월 기준), 한일경제협회
- 22) 2020년도 한일 간 주요통계(2020년 6월 기준), 한일경제협회
- 23) 2020년도 한일 간 주요통계(2020년 6월 기준), 한일경제협회
- 24) 외교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
- 25)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19.8);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통제대상품목”(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790005); 일본 경제산업성(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 26)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9.17., 2020.09.11.); 경제산업성(eMarketer, May 2019); 경제산업성 온라인유통망 보고서(2019)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